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년 5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

-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6.8%, 5,231억 7,0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8조 2,280억 9,000만원은 당초예산(7조 6,900억 9,200만원), 추경증액조정분(4,318억 4,100만원)과 간주처리분(1,061억 5,7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560억 2,800만원)을 합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4.7%, 3,689억 8,500만원 증가한 8조 2,841억 1,800만원임

〈표 2-1〉 예산현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A)	추경증액(B)	간주처리(C)	최종예산액 (D=A+B+C)	전년도이월액 (E)	예산현액 (F=D+E)
2015	7,690,092	431,841	106,157	8,228,090	56,028	8,284,118
2014	7,439,129	233,600	32,191	7,704,920	210,213	7,915,133
증감액	250,963	198,241	73,966	523,170	△154,185	368,985
증감률	3.4	84.9	229.8	6.8	△73.3	4.7

-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6.9%, 5,434억 5,600만원 증가한 8조 4,687억 7,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2.4%, 1,860억 3,600만원 증가한 7조 9,278억 5,1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94.8%, 3,574억 2,000만원이 증가한 5,409억 2,100만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218억 1,700만원(명시이월 795억 5,000만원, 사고이월 1,422억 6,700만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3,191억 400만원이며, 보조금잔액 및 지방교육채상환은 없음

〈표 2-2〉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최종예산(A)	8,228,090	7,704,920	8,045,686
전년도이월액(B)	56,028	210,214	210,350
예산현액(C=A+B)	8,284,118	7,915,133	8,256,036
세입결산액(D)	8,468,772	7,925,316	8,171,202
세출결산액(E)	7,927,851	7,741,815	7,872,251
세계잉여금(F=D-E)	540,921	183,501	298,951
명시이월	79,550	14,298	106,188
사고이월	142,267	41,729	104,025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잔액	0	1,777	244
지방교육채상환	0	0	0
순세계잉여금(G)	319,104	125,696	88,494
순세계잉여금률(G/C)	3.9	1.6	1.1

○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1,400만원 중 36건¹⁾의 사업에 대해 26억 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2-3〉 예비비 지출 결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7,714	2,602	2,287	163	152

1) 예비비 지출건수 36건은 예비비 지출사업(학교명 등)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조서(세입·세출결산서 p431~441) 상 33건(예비비지출요구에 대한 승인건수)과 차이 있으나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동 지출건수(36건)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음

Ⅲ.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²⁾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7조 9,253억 1,600만원) 보다 6.9%, 5,434억 5,600만원 증가한 8조 4,687억 7,200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78억 9,2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1,800만원임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C-A)	수납률 (C/A)	증감 (C-B)	수납률 (C/B)
2015	8,284,118	8,486,982	8,468,772	318	17,892	184,654	102.2	△18,210	99.8
2014	7,915,133	7,942,798	7,925,316	1,207	16,276	10,183	100.1	△17,482	99.8
증감액	368,985	544,184	543,456	△889	1,616				
증감률	4.7	6.9	6.9	△73.7	9.9				

2) 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자체수입 :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보증금회수,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 징수결정액(8조 4,869억 8,200만원) 대비 수납률과 미수납률은 각각 99.8%, 0.2%로 지난 회계연도와 유사하나, 미수납액의 규모(178억 9,200만원)는 직전회계연도(162억 7,600만원)보다 9.9%, 16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이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³⁾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2015년 10월 이후 추진되어 당해 연도 중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별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과도한 징구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C)		불납결손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2015	8,486,982	8,468,772	99.8	17,892	0.2	318	0.00
2014	7,942,798	7,925,316	99.8	16,276	0.2	1,207	0.02
2013	8,193,323	8,171,202	99.7	21,478	0.3	642	0.01

3)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9484, 2015.10.6.)

2. 자원별 세입결산

○ 자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3〉 자원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증감 (C-A)	수납률 (C/A)
합계	8,284,118	8,486,982	8,468,772	100.0	184,654	102.2
이전수입	7,128,402	7,315,385	7,315,285	86.4	186,883	1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32,798	4,437,243	4,437,243	52.4	4,445	100.1
국고보조금	77,391	77,391	77,391	0.9	0	100.0
법정이전수입	2,541,164	2,721,525	2,721,525	32.1	180,361	107.1
비법정이전수입	66,036	66,576	66,576	0.8	540	100.8
민간이전수입	6,976	8,612	8,512	0.1	1,536	12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38	4,038	4,038	0.0	0	100.0
자체수입	158,922	173,027	154,917	1.8	△4,005	97.5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31,701	134,743	131,251	1.5	△450	99.7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239	2,030	2,030	0.0	△209	90.7
사용료 및 수수료	5,013	5,026	4,998	0.1	△15	99.7
자산임대수입	318	609	533	0.0	215	167.6
자산매각대	8,284	2,136	2,125	0.0	△6,159	25.7
이자수입	1,992	3,949	3,948	0.1	1,956	198.2
보증금회수	15	145	141	0.0	127	943.7
제재금수입	535	1,511	927	0.0	392	173.3
기타수입	8,415	7,350	7,313	0.1	△1,102	86.9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0.0	1,242	403.7
지방교육채	815,070	815,069	815,069	9.6	△1	100.0
이월금	181,724	183,501	183,501	2.2	1,777	101.0

(1)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임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세입결산액(8조 4,687억 7,200만원)의 53.3%인 4조 5,146억 3,400만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은 32.9%인 2조 7,881억 1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0.1%인 125억 5,000만원으로 이전수입 총액은 7조 3,152억 8,500만원임
 - 이는 예산현액 7조 1,284억 200만원 보다 1,868억 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억 4,500만원, 서울시 법정전입금 1,803억 6,100만원, 민간이전수입 15억 3,600만원 등의 초과수납에 따른 것으로 검토됨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A)	7,128,402	7,164,265	7,394,448
결산액(B)	7,315,285	7,176,075	7,298,329
초과수납액 (B-A)	186,883	11,810	△96,119

- 2015회계연도 이전수입액은 세입결산액 대비 86.4%의 비중을 차지하여 직전회계연도 이전수입 비중(90.5%) 보다 $\Delta 4.1\%p$ 감소하였는 바,
- 교원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보전 등의 사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2014회계연도 (2,421억 4,300만원)보다 5,729억 2,600만원 증가된 8,150억 6,900만원을 발행함에 따라 이전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3-5〉 성질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세입결산액(A)		2014 세입결산액(B)		증감	
	결산액	구성비(A)	결산액	구성비(B)	결산액 증감 (A-B)	구성비 증감 (A'-B')
합 계	8,468,772	100.0	7,925,316	100.0	543,456	0.0
이전수입	7,315,285	86.4	7,176,075	90.5	139,210	$\Delta 4.1$
자체수입	154,917	1.8	208,147	2.6	$\Delta 53,230$	$\Delta 0.8$
지방교육채	815,069	9.6	242,143	3.1	572,926	6.5
이월금	183,501	2.2	298,951	3.8	$\Delta 115,450$	$\Delta 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4)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예산편성액(4조 4,327억 9,800만원) 대비 44억 4,500만원 증가한 4조 4,372억 4,300만원 수납되었음

〈표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 감 (B-A)	수납률 (B/A)
합 계	4,432,798	4,437,243	4,445	100.1
보통교부금	4,282,269	4,282,269	0	100.0
특별교부금	150,529	154,974	4,445	102.9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5)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015년 3월 교육부의 확정교부⁶⁾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 4조 2,822억 6,900만원 전액 전입되었음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6)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560, 2015.03.31.)

- **특별교부금**⁷⁾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 대책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예산액 1,505억 2,900만원보다 44억 4,500만원 증가된 1,549억 7,400만원이 수납된 바,

· 초과수납액은 회계연도 말 교부된 시도교육청평가지원사업 28억 8,100만원, 교육청의 대응투자분이 확보되지 않은 특화 WEE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1억 8,600만원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을 성립전 예산편성(우선확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육급여지원 외 8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 773억 9,1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은 직전회계연도(189억 5,300만원)보다 584억 3,800만원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2015년 6월 지방채 이자 및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 목적예비비 574억 8,4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표 3-7〉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4	2013
수납액		77,391 (19,907) ^{주1)}	18,953	43,548
전년대비	증감액	58,438 (954)	△24,595	
	증감률	308.3 (5.0)	△56.4	

주 1. ()는 국고 목적예비비 574억 8,400만원을 제외한 수치임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2조 7,215억 2,500만원이 전입되었음

- 이는, 당초 예산액(2조 5,411억 6,400만원) 보다 1,803억 6,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제1회 추경(2015.8.4. 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법정전입금 1,874억 2,800만원의 초과수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⁹⁾의 △70억 6,700만원 부족수납에 의한 것임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9)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임

※ 2015.2.1.~2016.1.31. 납입관리자 : 경상남도지사

〈표 3-8〉 법정이전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 감 (B-A)	수납율 (B/A)
합 계	2,541,164	2,721,525	180,361	107.1
지방교육세	1,224,090	1,389,076	164,986	113.5
담배소비세	217,996	217,996	0	100.0
시 도 세	985,710	1,008,153	22,442	102.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4,549	24,549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8,818	81,751	△7,067	92.0

○ 또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의 결산결과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증가,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3,118억 6,400만원의 법정이전수입 차액이 발생¹⁰⁾한 바,

-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세 1,266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260억 4,600만원, 시도세 1,592억 700만원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¹¹⁾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정산될 것으로 사료됨

10)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내역 알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4885, 2016.3.31.]
 11)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표 3-9〉 법정이전수입 미전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입대상액 (A)	실전입금 (B)	미전입액 (B-A)
합 계	2,927,089	2,615,225	△311,864
지방교육세	1,515,687	1,389,076	△126,611
담배소비세	244,042	217,996	△26,046
시 도 세	1,167,360	1,008,153	△159,207

(2) 자체수입

1) 자체수입

○ 2015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1,549억 1,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1,730억 2,700만원)의 89.5%가 수납된 것이며 총 세입 결산액(8조 4,687억 7,200만원)의 1.8%의 해당함

- 자체수입의 규모는 직전 회계연도(2,081억 4,700만원) 보다 △532억 3,000만원 감소한 것이며, 수납률 또한 직전 회계연도(92.2%) 보다 △2.7%p 감소한 바, 대규모 자산매각 사유 미발생, 수업료 납부대상자 감소 및 수업료 미수납액의 증가(직전회계연도 대비 23억 6,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0〉 자체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C/B)	구성비				
자체수입	158,922	173,027	154,917	89.5	100.0	318	17,792	
교수·회습 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31,701	134,743	131,251	97.4	84.7	254	3,239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239	2,030	2,030	100	1.3	0	0
행정활동수 입	사용료 및 수수료	5,013	5,026	4,998	99.4	3.2	0	27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318	609	533	87.5	0.3	0	76
	자산매각대	8,284	2,136	2,125	99.5	1.4	0	11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1,992	3,949	3,948	100	2.5	0	1
자체수입	보증금회수	15	145	141	97.9	0.1	0	3
	제재금수입	535	1,511	927	61.4	0.6	0	584
	기 타 수 입	8,415	7,350	7,313	99.5	4.7	0	37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10.6	1.1	63	13,814

○ 자체수입의 84.7%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1,347억 4,300만원)의 97.4%, 1,312억 5,1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회계연도(1,409억 9,100만원) 보다 △97억 4,000만원 감소하였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¹²⁾에 의거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규칙¹³⁾으로 정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이 물가안정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동결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동 세입원에 대한 수납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회계연도	계		유 ^{주2)}		고		방송통신고	
	학생수 ^{주1)}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2015	124,160	131,030	15,107	22	106,659	130,713	2,394	295
전년대비 증 감	△4,215	△9,657	1,555	△34	△5,554	△9,592	△216	△31
2014	128,375	140,687	13,552	56	112,213	140,305	2,610	326
전년대비 증 감	△4,767	△13,954	1,525	△6,254	△5,884	△7,641	△408	△59
2013	133,142	154,641	12,027	6,310	118,097	147,946	3,018	385

주 1. 서울교육통계(매년 4.1) 기준

주 2. 누리과정 지원 유아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알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346, 2013.01.17.)

1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3)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주1)}	입학금	비고
유치원(공립)	년액	396,000	5,200	
고등학교(공·사립)	년액	1,450,800	14,100	
방송통신고등학교	년액	135,000	5,300	

주 1) 수업료의 반기·분기·월액의 표기 생략

- 자체수입의 4.7%를 차지한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반납금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73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자체수입의 3.2%를 차지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49억 9,800만원이 수납되어 각각 징수결정액의 대비 99.5%, 99.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자수입**은 직전회계연도(41억 1,700만원) 보다 1억 6,900만원 감소한 39억 4,800만원으로
 - 교육재정의 악화에 따라 유희자금의 규모가 감소되었고, 2015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회에 걸쳐 인하¹⁴⁾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이자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세입결산액(A)	예금		정기예금		기타예금	
		일평균잔액	총예금이자(B=C+D)	일평균잔액	정기예금이자(C)	일평균잔액	기타예금이자(D)
2015	8,468,772	271,400	3,948	49,288	777 (19.7) *	222,112	3,171 (80.3)
2014	7,925,316	225,516	4,117	104,233	2,175 (52.8)	121,283	1,942 (47.2)
2013	8,171,202	590,344	14,909	337,589	10,141 (68.0)	252,755	4,768 (32.0)

* ()괄호는 총예금이자 대비 정기·기타예금이자 비율임

14)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준금리 (변경일)	2.75→3.00→3.25	3.0→2.75	2.5 (5.9.)	2.25 → 2.00 (8.14.) (10.15.)	1.75 → 1.50 (3.12.) (6.11.)

- 특히,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일평균잔액이 증가(20.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분할 전입 및 지출규모의 확대로 자금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2014회계연도 대비 정기예금의 예치규모(일평균 잔액)가 △52.7%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또한 △64.2%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전수입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시기에 따른 학교회계 전출금의 송금, 일상경비의 수시교부 등 보다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일정규모의 평균잔고를 유지하여 정기예금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

○ **자산매각대**는 징수결정액(21억 3,600만원) 대비 99.5%인 21억 2,500만원이 수납되어 자체수입의 1.4%를 차지함

- 기존 점유자의 요청 혹은 주택건설사업 편입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등 토지매각 대금 20억 8,700만원, 불용 물품 및 기계장치 매각 대금 2,400만원, 전신전화보증금 회수에 따른 수입 1,400만원임

2)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 2015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730억 2,700만원의 10.3%인 177억 9,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162억 7,600만원) 보다 15억 1,600만원 증가함
- 특히 수업료의 미수납액은 32억 3,900만원¹⁵⁾으로 2014회계연도 (8억 7,000만원) 대비 23억 6,900만원 증가한 바,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한 1차적인 원인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¹⁶⁾(회계연도 끝난 후 2월→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으로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¹⁷⁾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함에 따른 것으로 검토됨

〈표 3-13〉 자체수입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금액 (D=A-B-C)	비율 (D/A)
2015	173,027	154,917	318	17,792	10.3
2014	225,630	208,147	1,207	16,276	7.2
증 감	△52,603	△53,230	△889	1,516	

15) 2015회계연도 중 미수납된 수업료는 2016년도로 이월되어 지난년도수업료로 징수됨

16)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이하 생략)

17)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징수방법)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이하생략)

[별표 1] 초·중등학교수업료 분할 징수표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다음년도 2월말

- 실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103억 2,200만원(58.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33억 1,600만원(18.6%), 재산압류 26억 3,800만원(14.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이 △19억 8,2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산압류로 인한 미수납액은 13억 9,100만원 증가한 바, 서울시교육청이 미수납액 관리를 위해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미납자의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등 징수노력을 한 결과로 사료됨

〈표 3-14〉 자체수입 사유별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 산 압류중	기타
2015	17,792 (100.0)	145 (0.8)	230 (1.3)	10,322 (58.0)	1,141 (6.4)	2,638 (14.8)	3,316 (18.6)
2014	16,276 (100.0)	77 (0.5)	134 (0.8)	12,304 (75.6)	1,313 (8.1)	1,247 (7.7)	1,201 (7.4)
증감	1,516	68	96	△1,982	△172	1,391	2,115

- 다만, 장기체납 변상금·부당이득금 등 과년도 수입¹⁸⁾의 경우, 미수납액은 138억 1,4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144억 9,600만원)에 비해 6억 8,200만원 감소한 것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88.9%로 8.6%p 증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8)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과년도수입

〈표 3-15〉 자체수입 미수납 발생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정액 (A)	수납액 (B)	불납 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미수 납률	구성 비율	
합계	155,340	169,571	151,461	318	17,792	10.5	100.0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131,287	134,309	130,815	255	3,239	2.4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2,831 -유치원: 0.4 -고등학교: 2,830.6 ◦ 지난년도 수업료: 408 -고등학교: 408
사용료수입	4,203	4,231	4,204	0	27	0.6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사용료: 21 ◦ 수영장사용료: 6
임대료수입	318	609	533	0	76	12.5	0.4	◦ 대부료: 76
토지매각	8,250	2,098	2,088	0	11	0.5	0.1	◦ 토지매각대금분납금 : 11
이자수입	1,992	3,949	3,948	0	1	0	0.0	◦ 사업정산 이자: 1
보증금 회수	15	145	142	0	3	2.1	0.0	◦ 계약해지 보증금 회수 : 3
변상금	239	757	257	0	500	66	2.8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500
연체료	131	411	334	0	77	18.7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연체료: 38 ◦ 과태료 체납 증가산금 : 39
과태료	82	184	176	0	7	3.8	0.0	◦ 학원과태료: 7
그외수입	8,414	7,350	7,313	0	37	0.5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비용액: 36.5 ◦ 대부료 및 변상금 분납 이자: 0.5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63	13,814	88.9	7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각대금: 9 ◦ 토지매각분할이자: 32 ◦ 대지료: 181 ◦ 대가료: 5 ◦ 변상금: 6,947 ◦ 위약금: 2,250 ◦ 변상금분납이자: 128 ◦ 소송비용액: 541 ◦ 부당이득금: 3,255 ◦ 학원과태료: 466

(3) 전년도이월금

- 2015회계연도 전년도 이월금 결산액은 1,835억 1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256억 9,600만원, 명시·사고이월액 560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700만원을 수납한 것임
- 이월금 중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7억 7,700만원 전액 초과수납이 발생한 바,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 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 지원기관에 반납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도 추경 시 세출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입예산은 누락하였기 때문에 검토됨
- 세입예산의 미편성은 세출재원의 적정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표 3-16〉 전년도이월금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 감 (B-A)	수납률 (B/A)
합 계	125,696	181,724	183,501	1,777	101.0
순세계잉여금	125,696	125,696	125,696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주1)}	0	56,028	56,028	0	100.0
보조금집행잔액	0	0	1,777	1,777	순증

주 1.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

IV.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0억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1,8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7조 9,151억 3,300만원) 대비 4.7%, 3,689억 8,500만원 증가된 것임
- 세출결산 현황은 지출액이 7조 9,278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7조 7,418억 1,500만원, 97.8%) 대비 집행률은 $\Delta 2.1\%p$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8억 1,700만원(2.7%)이고 집행잔액은 1,344억 5,000만원 (1.6%) 발생되었음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D=A-B-C)	비율 (D/A)
2015	8,228,090	56,028	8,284,118	7,927,851	95.7	221,817	2.7	134,450	1.6
2014	7,704,920	210,213	7,915,133	7,741,815	97.8	56,028	0.7	117,290	1.5
증감액	523,170	$\Delta 154,185$	368,985	186,036		165,789		17,160	
증감률	6.8	$\Delta 73.3$	4.7	2.4		295.9		14.6	

○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 인적자원운용이 4조 1,681억 5,8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52.6% 지출되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1조 6,559억 9,600만원(20.9%) 지출되었으며,
- 교육복지지원사업은 9,179억 8,900만원(11.6%)이 지출되었음

〈표 4-2〉 부문·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B)	비율 (B/A)	구성비	(C)	비율 (C/A)	(D=A-B-C)	비율 (D/A)
합 계	8,284,118	7,927,851	95.7	100.0	221,817	2.7	134,450	1.6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38,919	7,701,778	95.8	97.1	218,930	2.7	118,211	1.5
인적자원운용	4,208,448	4,168,158	99.0	52.6	755	0.0	39,535	0.9
교수-학습활동지원	339,630	320,328	94.3	4.0	10,260	3.0	9,042	2.7
교육복지지원	954,261	917,989	96.2	11.6	3,428	0.4	32,844	3.4
보건/급식/체육활동	361,345	336,440	93.1	4.2	19,545	5.4	5,360	1.5
학교재정지원관리	1,662,574	1,655,996	99.6	20.9	0	0.0	6,578	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12,661	302,867	59.1	3.8	184,942	36.1	24,852	4.8
평생·직업교육	22,700	20,906	92.1	0.3	590	2.6	1,204	5.3
평생교육	19,480	18,287	93.9	0.2	26	0.1	1,167	6.0
직업교육	3,220	2,619	81.3	0.0	565	17.5	37	1.1
교육일반	222,499	205,167	92.2	2.6	2,296	1.0	15,035	6.8
교육행정일반	49,855	43,801	87.9	0.6	1,841	3.7	4,212	8.4
기관운영관리	41,946	39,358	93.8	0.5	425	1.0	2,163	5.2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25,586	122,008	97.2	1.5	30	0.0	3,548	2.8
예비비및기타	5,112	0	0.0	0.0	0	0.0	5,112	100.0

○ 주요 정책사업의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 증감현황을 검토하면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9.1%(767억 2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교육복지지원사업 중 누리과정지원비가 852억 8백만원 증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6.9%(2,689억 9,700만원) 증가된 바,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라 교원인건비가 2,188억 7,500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며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5.6%(872억 9,3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공무원 보수를 준용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재정결합지원비가 561억 7,900만원 증가하고 학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이 334억 7,200만원 증가된 것에 의한 것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도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에 따라 지출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4-3〉 주요 정책사업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증 감	
	지출액(A)	구성비	지출액(B)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세출 결산액	7,927,851	100.0	7,741,815	100.0	186,036	2.4
교육복지지원	917,989	11.6	841,287	10.9	76,702	9.1
인적자원운용	4,168,158	52.6	3,899,161	50.4	268,997	6.9
학교재정지원관리	1,655,996	20.9	1,568,703	20.3	87,293	5.6
보건/급식/체육활동	336,440	4.2	327,555	4.2	8,885	2.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20,867	3.8	320,169	4.1	698	0.2
교수-학습활동지원	320,328	4.0	348,183	4.5	△27,855	△8.0

- 결국,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비와 경직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세출 결산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 마다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어 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유사사업의 통폐합,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편성 등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잔액 관련

-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¹⁹⁾은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1.6%, 1,344억 5,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집행잔액률 1.5%, 1,172억 9,000만원) 보다 171억 6,000만원(14.6%)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집행잔액의 감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집행잔액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4-4〉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A)	8,284,118	7,915,133	8,256,035
집행잔액(B) (집행잔액률 B/A)	134,450 (1.6)	117,290 (1.5)	173,571 (2.1)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17,160 (14.6)	△56,281 (△32.4)	

19)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기존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

○ 집행잔액을 발생원인²⁰⁾별로 검토하면, 집행잔액의 98.6%(1,325억 5,600만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표 4-5〉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2015~20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원인			
		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5	134,450 (100.0)	1,178 (0.9)	1 (0.0)	715 (0.5)	132,556 (98.6)
2014	117,290 (100.0)	17,446 (14.9)	0 (0)	17,315 (14.7)	82,529 (70.4)
2013	173,571 (100.0)	12,445 (7.2)	4 (0)	9,987 (5.8)	151,135 (87.0)

20)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2015.12. 교육부)

-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중 세출 설명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을 발생원인에 따라 작성하되,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구분

(1)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집행잔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표 4-6〉 집행잔액 50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직전 회계연도(2014)			소관부서
		비율	구성비 ^{주1)}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교원인건비	3,492,595	27,147	0.8	20.2	3,256,375	9,802	0.3	예산담당관
교과서 지원	61,382	24,084	39.2	17.9	54,211	127	0.2	교육혁신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38,413	13,089	5.5	9.7	126,133	5,707	4.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신증설	238,872	11,340	4.8	8.4	234,049	25,298	10.8	학교지원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190,170	8,495	4.5	6.3	172,760	11,674	6.8	예산담당관

주 1. 구성비 : 총 집행잔액 대비 해당 세부사업 집행잔액 비율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는 예산현액(3조 4,925억 9,500만원)의 0.8%인 271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는 총 집행잔액의 20.2%를 차지함

- 더욱이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409억 3,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직전 회계연도보다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소극적으로 소요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원인건비 예산 편성에 보다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혁신과 소관 **교과서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특수 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39.2%, 240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집행잔액의 98.1%인 236억 3,700만원은 2016학년도 1학기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 예산임
- 다음 학년도 1학기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의 경우, 매년 12월에 납품이 시작되어 다음연도 1~2월까지 3~4회 분할 납품되고 3월 경(학년도 초)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정산을 거쳐 완료하는 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발행사업 입찰선정²¹⁾이 늦어져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1학기 국정교과서가 적기에 납품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²²⁾ 교육부의 입찰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12월 중에 납품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은 것²³⁾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표 4-7〉 2015회계연도 중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구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 예산액(A)	2015년 12월 집행(B)	집행잔액(C=A-B)
35,620	11,983	23,637

- 그러나, 12월 중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의 집행잔액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 2016년도 본예산

21)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실시

22)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616호(2016.4.4.).

23)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호(2016.5.9.)

및 명시이월 승인 의결(2015.12.22.) 전인 예산 심사과정 중이라도 추가로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하고, 추후 실제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국정교과서 납품지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에 2016년 1~2월에 공급될 교과서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표 4-8〉 2014~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대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당해연도 회계		다음연도 회계	
		집행액(B)	비율(B/A)	집행액(C)	비율(C/A)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43,026	11,983 (35,620) ^{주1)}	27.9 (82.8)	31,043	72.1
2015학년도 1학기 교과서	49,001	34,215	69.8	14,786	30.2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서	49,556	39,750	80.2	9,806	19.8

주 1. ()는 집행잔액 중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구입예정 예산 236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 2015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²⁴⁾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2015년 12월까지 공급된 교과서 대금만 집행(지출)할 수 있음에도 직전 회계연도처럼 관행적으로 다음연도 1~2월에 공급될 교과서 대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24)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물론 매년 다음 학년도 1학기 교과서 공급이 2개년에 걸쳐 분할 공급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는 연도 중 공급되는 교과서 대금만 편성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384억 1,300만원의 5.5%인 130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128억 7,300만원 (98.3%)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1,600만원(1.7%)임

〈표 4-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원인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5	238,413	13,089 (100.0)	5.5	216 (1.7) *	0 (0.0)	0 (0.0)	12,873 (98.3)
2014	126,133	5,707 (100.0)	4.5	250 (4.4)	0 (0.0)	0 (0.0)	5,457 (95.6)

* () 괄호는 총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낙찰차액, 준공정산, 동일공정의 다수현장 병행 집행, 현장 상황(학교 의견)에 따른 시공물량(공법) 조정(변경) 등 집행 당시 상황에 따라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매년도 예산편성 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기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잔액을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는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 사업은 예산현액 2,388억 7,200만원의 4.8%인 113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예산현액의 10.8%, 252억 9,800만원)과 비교하여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감소(△139억 5,800만원)된 바,
-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설 학교별로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지연되거나 소요액이 감소한 학교에 대하여 △181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²⁵⁾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 신·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예산 집행잔액’은 108억 500만원(95.3%), ‘지급사유 미발생’이 4억 7,500만원(4.2%), ‘계획 변경 및 취소’가 6,000만원(0.5%)임

〈표 4-10〉 학교신·증설 사업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원인			
		비율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5	238,872	11,340 (100.0)	4.8	60 (0.5)*	0 (0.0)	475 (4.2)	10,805 (95.3)
2014	234,049	25,298 (100.0)	10.8	7,106 (28.1)	0 (0.0)	14,907 (58.9)	3,285 (13.0)

* () 괄호는 총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25) 내곡중 △19억 2,500만원, 거여고 △141억 7,300만원, 서울다원학교 △20억 9,600만원 등 △181억 9,400만원 감액 조정

- ‘지급사유 미발생’(4억 7,500만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6,000만원)로 발생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11〉 지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잔액		구체적 발생사유
					비율	
지급사유 미발생	소 계		475	475	100.0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건설비	39	39	100.0	병설유치원 내 유희교실 활용으로 인한 미집행
	울현초 신설	건설비	436	436	100.0	2014년 사고이월예산으로 울현초 신설에 따른 개발사업자 SH공사의 시설설치비 미정산으로 교육청 분담액 미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계획 변경 및 취소	잠신초 교실증축	학교회계 전출금	60	60	100.0	교실증축계획 취소에 따른 내부비품비 미집행

-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사업의 경우 당초 초등학교 교실을 병설유치원 교실로 전환하여 학급 증설하고자 바닥 공사비(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전 병설유치원 내 유희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조정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 잠신초 교실증축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지역주민의 민원²⁶⁾에 의하여 교실 증축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통상 증축이 완료된 후 집행되는 내부비품비를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하지 않아 예산 현액 전액(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임

26) 리센즈아파트 입주민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13회, 민원방문 5회, 항의전화, 현수막 설치 등
- 민원 요지 : 수직증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선보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용에 따른 분진, 소음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요구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학교 신·증설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지연되거나 소요액이 감소한 학교에 대하여 181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비해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잠신초등학교 교실증축 집행잔액 발생건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추경 편성 전에 이미 감액조정 사유가 확정되었음에도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 사유가 명확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조정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은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고자 정규 교원을 대신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01억 7,000만원의 4.5%, 8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예산현액의 6.8%, 116억 7,400만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31억 7,900만원)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하여 증액한 86억 1,300만원의 98.6%, 84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표 4-12〉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과목	본예산액	추경증액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최종예산액 대비 비율	집행잔액 내구성비	추경증액 대비 비율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 계	181,557	8,613	190,170	8,495	4.5	100.0	98.6
	인건비	148,482	8,613	157,095	2,129	1.4	25.0	24.7
	민간이전	406		406	380	93.6	4.5	4.4
	학교회계 전출금	32,669		32,669	5,986	18.3	70.5	69.5

○ 비록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86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과목은 인건비이고 인건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21억 2,900만원(집행잔액의 25.0%, 추경 증액의 24.7%)이지만,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의 집행잔액 59억 8,600만원(집행잔액의 70.5%, 추경 증액의 69.5%)을 추경 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제교원 인건비’ 라는 세부사업에서 추경 증액분(86억 1,300만원)의 98.6%인 8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임

○ 다만, 계약제교원 인건비 중 보수와 4대 보험료는 예산담당관이, 퇴직금은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한적이고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의 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나

- 2015회계연도가 5개월이 경과된 후 6월 10일에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명예퇴직, 휴직 등 교원 수급상황, 5개월간의 집행액, 실제 소요기관에 대한 향후 7개월간의 소요액 조사 및 3~5개년간의 집행액, 인건비 인상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목별 추경 증감액을 조정하였다면 동 사업의 추경 증액분의 대부분을 불용시키는 비합리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3〉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 회계연도별 과목별 집행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2015	2014	2013	2012	2011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 계	181,675	161,085	158,350	132,754	110,820
	인건비	154,967	136,877	136,654	112,129	94,429
	민간이전	45	15	15	15	14
	학교회계전출금	26,663	24,193	21,681	20,610	16,377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

- 2014회계연도에서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은 20건 142억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2건 417억 2,900만원으로 총 102건 560억 2,800만원이며, 이 중 17.5%, 98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표 4-14〉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합 계	56,028	43,003	3,208	9,817	17.5
명시이월	14,299	7,631	3,208	3,460	24.2
사고이월	41,729	35,372		6,357	15.2

-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조정할 수 없음에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률(17.5%)은 전체 집행잔액률(1.6%)의 11배에 이르고 있는 바,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이월요구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월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1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모두 학교 신설사업으로 3건 85억 4,000만원이 발생한 바, 이월사업비 집행잔액(98억 1,700만원)의 87.0%에 해당함

〈표 4-15〉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을 100%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이월 구분	사업내역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소관 부서
					비율		
합 계		8,540	0	8,540	100.0		
명시 이월	거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3,000	0	3,000	100.0	군부대 이전 등 부지조성 공사 미완료로 계약 미체결	교육 재정과
사고 이월	송신초 이전신설 (토지매입비)	5,104	0	5,104	100.0	재개발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재정과
	울현초 학교신설 (건설비)	436	0	436	100.0	개발사업자 SH공사의 울현초 신설 시설설치비 미정산으로 교육청 분담액 미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강남 교육지원청

- 상기 학교 신설사업의 최초 예산편성 연도부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 거여고 학교신설은 2014년도에 신설예산(52억 6,700만원)이 최초로 편성되었고 그 중 토지매입비(30억원)가 1차례 이월을 거쳐 결국 미집행(30억원)되었음
- 송신초 이전신설은 2013년도에 신설예산(217억 8,700만원)이 최초로 편성되어 토지매입비가 2차례 이월(2013회계연도 176억

7,400만원 명시이월, 2014회계연도 51억 4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나, 미집행(51억 400만원)되었음

- 율현초 학교신설은 2014년도에 신설예산(10억 700만원)이 공사비 분담금 명목으로 처음 편성되어 1차례 이월(4억 3,600만원) 후 미집행(4억 3,600만원)되었음

〈표 4-16〉 거여고, 송신초, 율현초 신설사업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개교)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전년도이월)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거여고 (‘18.3)	2015	토지 매입비	0	3,000	0	0	0	3,000
		건설비	0	616	616	0	0	0
	2014	토지 매입비	3,000	3,000	0	3,000	0	0
		건설비	2,267	2,267	0	0	616	0
송신초 (‘15.9)	2015	토지 매입비	1,798	6,902	0	1,798	0	5,104
		건설비	4,800	10,082	9,233	0	0	849
		학교회계 전출금	195	195	195	0	0	0
	2014	토지 매입비	15,037	32,711	27,607	0	5,104	0
		건설비	6,389	10,067	4,785	0	5,282	0
	2013	토지 매입비	17,721	17,721	47	17,674	0	0
건설비		4,066	4,066	432	3,634	0	0	
율현초 ^{주1)} (‘14.9)	2015	건설비	0	436	0	0	0	436
	2014	건설비	1,070	1,070	0	0	436	634

주 1. 서울율현초등학교는 SH공사가 세곡2지구개발사업 시행 시 무상으로 공급한 신설학교임

- 예산규모가 크고 외부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결정되는 학교 신설사업의 특성상 유사한 사유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것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이월액이 전액(100%)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 객관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이월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 내역은 1,000만원 이상의 예산현액 전액(100%)이 미집행된 사업임

〈표 4-17〉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소관
1	학교신증설	(가칭)거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	3,000	3,000	학교 지원과
2	정보보안관리	정보보안시스템(TMS) 노후장비 교체	925	925	정보화 담당관
3	학교신증설	율현초 학교신설	436	436	학교 지원과
4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223	223	총무과
5	시설사업관리	시설기동점검보수반 차량 구입	152	152	교육시설 안전과
6	조직및성과관리	기관장부속실업무 아웃소싱 인건비	125	125	행정관리 담당관
7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교수학습용 H/W 유지보수	65	65	교육 혁신과
8	학교신증설	잠신초 교실증축 내부비품비	60	60	학교 지원과
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재현고 화장실개선	60	60	교육시설 안전과
10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기부전문가 인건비	52	52	참여협력 담당관
11	학교신증설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설 시설비	40	40	학교 지원과
12	학교신증설	세곡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설 시설비	40	40	학교 지원과
13	학교급식환경개선	대동세무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40	40	체육 건강과
14	학교급식환경개선	대진디자인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40	40	체육 건강과
15	정보화지원	국·공·사립 인터넷통신비 지원	40	40	참여협력 담당관
1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우암초 방수공사	37	37	교육시설 안전과
17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교수학습용 S/W 감리비	32	32	교육 혁신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소관
18	스마트교육지원	스마트교실 구축(전동초)	28	28	교육 혁신과
19	계약제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대체직원(청, 직속) 퇴직금	21	21	총무과
2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영훈고 가로수등 설치	20	20	교육시설 안전과
21	스마트교육지원	스마트교실 구축(전일중)	20	20	교육 혁신과
22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외부컨설팅 연구	19	19	교육 혁신과
23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NAS장비 구입	19	19	교육 혁신과
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영훈고 외부환경개선	15	15	교육시설 안전과
25	교직원단체관리	교원단체(자교조)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문화체험)	15	15	행정관리 담당관
26	교직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협약이행계획서 인쇄	15	15	총무과
27	도서관운영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평가우수기관 시상	15	15	평생 교육과
28	사학기관관리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	10	학교 지원과

- 정보화담당관 소관의 정보보안시스템 노후장비(TMS) 교체사업 (9억 2,500만원)은 2016년도 중에 개시되는 3단계 스쿨넷²⁷⁾ 사업과 연계하여 통신 사업자가 구축하도록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27) 스쿨넷<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검색 발췌>

- 2005년 말 초고속국가망사업 종료 이후 각급 학교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학교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운영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National Info-comm Service) 스쿨넷서비스 부문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 중임.
- 2단계 스쿨넷서비스는 교육부를 주관기관으로 10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가 인터넷 및 회선서비스를 제공('11.3월~'16.2월)하였음
-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와 체결한 협약('16.3월~'21.8월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16년 3월부터 3단계 스쿨넷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까지 개통 완료 예정임

- 총무과 소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사업 (2억 2,300만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7월에 확정함에 따라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례에서 검토되듯이 업무추진 일정상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 및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신중하지 못하여 계획이 취소·변경되거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미집행이 확실 시 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적극 발굴하고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기타 제언

-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기존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을 세분화하는 범주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어 기존 불용액 즉,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잔액’ 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의 특성상 예상소요액에서 적정 집행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액으로 인식되어 사업주관 부서 등이 재정책임성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고, 기존의 ‘불용액’이 갖는 이른바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결과라는 단어 자체의 전달력도 희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²⁸⁾ 및 제59조의2 제4항²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는 ‘집행잔액’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바목³⁰⁾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작성사항 중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통합기준」에도 ‘집행잔액’과 기존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유사 용어 간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다시 개정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29)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지출 바. 불용액

3.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31)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2015회계연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2015. 1. 1. 시행)으로 79건, 4,629억 2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한 바, 직전 회계연도(1건, 398억 9,500만원)보다 78건, 4,230억 7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4-18〉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발생건수	79	1	45
이 체 액	462,902	39,895	283,376

-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를 검토하면
 - 기획조정실 교육복지담당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교원정책과의 폐지로 인해 3개 부서의 소관예산인 37개 세부사업 4,307억 5,900만원이 신설된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정책국

3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교육혁신과·민주시민교육과 등 8개 부서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체액(4,629억 200만원)의 93.0%에 해당함

〈표 4-19〉 폐지부서 소관예산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체 부서		건수	이체액	비고
준 부서	받은 부서			
합 계		37	430,759	
교육복지담당관(폐지)	소 계	11	162,865	
	행정관리담당관	1	191	
	참여협력담당관(신설)	8	162,552	
	교육혁신과(신설)	1	52	
	강서교육지원청	1	70	
교육과정정책과(폐지)	소 계	14	94,617	
	교육혁신과(신설)	6	63,558	
	초등교육과	1	300	
	중등교육과	5	22,939	
	민주시민교육과(신설)	2	7,820	
교원정책과(폐지)	소 계	12	173,277	
	교육혁신과(신설)	1	21,895	
	유아교육과	1	7	
	초등교육과	4	56,074	
	중등교육과	5	95,256	
	민주시민교육과(신설)	1	45	

- 기타 초등교육과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혁신학교운영 등 71억 6,000만원이 교육혁신과로, 혁신교육지구운영 52억 6,500만원이 참여협력담당관으로 이체되는 등 사무분장의 조정에 따라 42건, 321억 4,2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4.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³²⁾의 단서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총칙³³⁾으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각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임
-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용은 1건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 사업 중 만3~5세 보육료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교원 인건비로부터 22억 7,500만원을 이용한 것임

〈표 4-20〉 2015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목	현액	이용액		이용일자	사유
				증	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자치단체이전	341,177	2,275		12.21.	누리과정보육료 부족분 충당
인적자원운용	교원인건비	인건비	2,752,399		△2,275		

- 만3~5세아 보육료는 이용 뿐 아니라 동일 세부사업 내 만3~5세아 유아학비로부터 63억 3,300만원을 전용 받아 총 86억 800만원의 부족분을 해소한 바,

3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33) 예산총칙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p.3]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상환지출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누리과정사업비

- 201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시 서울시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총 예상소요액(3,558억 6,100만원) 보다 146억 9,100만원 (0.5개월분) 부족 편성³⁴⁾되어 연도 중 이·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사항으로, 연도 말 실 소요액 산출로 이·전용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1,344억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예산편성이 전제되었다면 이용이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34)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만3~5세아 보육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요액 (A)	본예산 (B)	추경증액(C)				미편성액 (D=A-B-C)
		계	지방채	목적예비비	자체재원	
355,861	91,421	249,749	137,700	57,500	54,549	14,691

5.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³⁵⁾에 의해 정책사업 내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에는 74건, 242억 9,9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 바, 이는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0.3%에 해당함
- 직전 회계연도(48건, 239억 6,700만원)와 비교하면 전용액은 3억 3,200만원(1.3%) 증가한 반면, 전용건수는 26건(54.1%) 증가한 바, 이는 5,000만원 이하의 소액전용이 직전 회계연도(27건)보다 2배 많은 57건이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4-21〉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건 수	74	48	93
전 용 액	24,299	23,967	15,709

- 성질별 세출예산의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014회계연도에는 185억 2,900만원이었던 인건비 전용(총 전용액의 77.3%)이 2015회계연도에는 38억 9,600만원(총 전용액의 16.0%)으로 △146억 3,300만원 감소한 반면,

35)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만3~5세아 보육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63억 3,300만원, 혁신교육지구운영의 사업집행주체 변경에 따른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 52억 8,600만원 등 교육사업비의 전용액은 153억 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4억 1,800만원)에 비해 98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대상기관 선정결과에 따른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예산과목 간 전용 28억 1,600만원 등 시설사업비 전용액은 28억 6,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하였음

〈표 4-22〉 성질별 예산 전용규모

(단위 : 백만원, %)

예산구분	2015(A)		2014(B)		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299	100.0	23,967	100.0	332
인건비	3,896	16.0	18,529	77.3	△14,633
기관운영비	57	0.2	20	0.1	37
학교운영비	2,178	9.0	0	0	2,178
교육사업비	15,308	63.0	5,418	22.6	9,890
시설사업비	2,860	11.8	0	0	2,860

○ 전용액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례는 총 8건, 221억 7,5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242억 9,900만원)의 91.2%에 해당³⁶⁾하는 바, 주요 발생사례를 검토하면,

36) 5억원 이상의 전용은 2014회계연도(9건, 223억 8,500만원)에 비해 △1건, △2억 1,000만원 감소함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운영의 사업집행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전출금등’ 52억 5,000만원을 인건비 외 7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음

〈표 4-23〉 교육복지우선지원 중 혁신교육지구운영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주1)}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증	감		
교육복지 우선지원	인건비	2	4	0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5.1.1.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5.11.
	운영비	92	344	0		
	여비	0	9	0		
	업무추진비	21	40	0		
	보전금	0	22	0		
	민간이전	2	70	0		
	자치단체이전	0	133	0		
	학교회계전출금	601	4,628	0		
	전출금등	0 ^{주2)}	0	5,250		

주 1. 예산액은 예산심사 시 의결된 순수 편성액으로 전년도이월액이나 성립후 증감(이체, 이·전용, 예비비지출 결정)을 반영한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음

주 2. 상기 사업은 이체된 예산으로 일부과목의 예산은 ‘0’으로 표기됨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교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에 대해 각 7억 5,000만원, 총 52억 5,000만원을 전출하기 위하여 ‘전출금등’으로 편성하였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³⁷⁾으로 교육지원청 내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협력복지과³⁸⁾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여건의 변경에 따른 탄력적 예산집행이라는 점에서 사유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³⁹⁾이 전용을 통한 업무추진비 증액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 전용으로 업무추진비 4,000만원 증액한 바,
- 교육청은 당초 편성된 ‘전출금등’은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업 세부내역에는 대외활동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전용은 필요한 것⁴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추진의 필요성만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제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7개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⁴¹⁾에 따른 계약제 교원 지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⁴²⁾의 경우, 대상학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집행된

37)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93호, 2014.12.24., 일부 개정, 시행 2015.1.1.]

3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조(교육지원국) ⑥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학교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지원** (이하 생략)

3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40) 예산담당관-4168(2015.5.7.)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용 발취

41)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2015.3.16. 발취]

-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임
- 증설학급운영을 위해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실리모델링, 책걸상 구입비 등 지원
- ※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원은 7개 혁신교육지구 모두 교육지원청 추진

사업임에도 전용이 완료된 5월 11일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학교 자체 운영비로 우선 집행하는 등 전용 시기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용일지라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시기의 전용 및 예산 교부로 일선학교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30억원을 수혜대상기관 확정에 따라 예산과목 간 전용하였음

- 동 예산은 서울시 협력사업인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에 대응 투자하기 위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3월, 대상기관 12개교(초 3개교, 중 2개교, 고 7개교)를 선정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시행하는 공립 11개교의 소요예산 26억 7,200만원을 건설비로 전용한 것임

〈표 4-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증	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1,077	2,672	0	화장실개선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목간 예산 조정	4.15.
	학교회계 전출금	3,040	0	2,672		

42)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2015.3.16. 발췌]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임
 ※ 7개 혁신교육지구 중 3개 지구(구로·노원·도봉구)는 교육지원청 추진

- 예산담당관 소관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 5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방법 변경을 위한 전용(2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4-25〉 학교운영비지원 중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학교운영비 지원	복리후생비	0	2,178	0	맞춤형복지비 단체보험료 일괄 집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2.9.
	학교회계 전출금	238,621	0	2,178		

- 맞춤형복지비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속기간 1년 이상 (2015.1.1 기준)의 직원에게 생명·상해 등 보장성 보험(기본 항목)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비 등(자율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맞춤형복지점수 배정방법을 일괄 350p 지급으로 변경⁴³⁾하면서 복지비 전액을 각급학교로 교부하고, 학교 별로 산출된 단체보험료를 계약 보험사에 개별납부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학교의 업무경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서에서 일괄집행키로 함에 따라 단체보험료 예산 21억 7,8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4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점수 배정방법 변경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총 복지점수	단체보험료+일괄 150p 보험선택에 따라 개인별 복지점수 상이	일괄 350p(단체보험료+자율항목) 총 복지점수에서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잔여 포인트
자율항목 점수	150p	

〈표 4-26〉 주요 전용사업(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증	감		
누리과정지원	자치단체전	341,177	6,334	0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조정	12.21.
	학교회계전출금	249,752	0	6,334		
교육복지우선지원	인건비	2	4	0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5.1.1.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05.11.
	운영비	92	344	0		
	여비	0	9	0		
	업무추진비	21	40	0		
	보전금	0	22	0		
	민간이전	2	70	0		
	자치단체전	0	133	0		
	학교회계전출금	601	4,628	0		
	전출금등	0	0	5,25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650	900	0	공립학교 특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08.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800	0	60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	0	300		
	학교회계전출금	1,650	1,100	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비율 조정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12.24.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800	0	65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	0	45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	1,075	2,672	0	화장실개선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목간 예산 조정	04.15.
	학교회계전출금	3,045	0	2,67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증	감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 건 비	334,699	2,630	0	지방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12.15.
	직무수행 경 비	11,575	166	0		
	민간이전	75,466	0	2,796		
학교운영비 지원	복리후생비	0	2,178	0	맞춤형복지비 단체보험료 일괄 집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02.09.
	학교회계 전 출 금	238,621	0	2,178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인 건 비	35,667	945	0	교육전문직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12.15.
	민간이전	7,876	0	945		

- 5억원 미만의 전용 중 주요 사례를 검토하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육연수원 내 위치하였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이전함에 따라 강의실을 확충(13실)하고 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하고자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4-27〉 교원연수운영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일자
			증	감		
교원연수 운 영	유형자산	85	143	0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2015년 12월 하반기부터 시작, 2016년 1·2월에 종료되는 동계 자격연수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중앙교육 연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강의실 책상 및 노후 기자재교체를 위해 운영비를 유형자산비로 전용처리	10.29.
	운영비	2,096	0	143		
	유형자산	85	187	0		10.29.
	운영비	2,096	0	187		

- 교육연수원은 전용 사유를 ‘2015년 12월 하순부터 익년도 1~2월 까지 시행되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14개 과정의 자격 연수를 위한 운영비 6억 9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이 출납폐쇄 기한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바, 2015년 10월 중앙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시설공백이 발생한 강의실의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하여 유형자산으로 전용하였다’고 설명⁴⁴⁾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전용으로 감액된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검토하면, 본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2016년 1~2월에 집행 예정인 강사수당 및 운영수당 등 2016년도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는 바, 전용으로 감액처리하기 보다 추경을 통해 집행 잔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방 이전으로 강의실 기자재 확충 등의 예산소요가 예상되었다면 추경예산 편성으로 확보⁴⁵⁾할 수 있었음에도 연도 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검토됨
- 전용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과도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44)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재정지원과-6525(2015.10.16.) 예산 전용 신청 일부 발췌

45)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제1회 추경을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시설공백이 발생한 2실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6.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46)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명시이월은 113건, 795억 5,000만원으로 이월률은 1.0%이며, 직전 회계연도(20건, 142억 9,900만원) 대비 93건, 652억 5,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4-28〉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명시이월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5	8,284,118	113	79,550	1.0	65,251	456.3
2014	7,915,133	20	14,299	0.2	△91,889	△86.5
2013	8,256,035	41	106,188	1.3		

4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5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증가한 것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조47)의 시행으로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폐쇄기한이 일치하게 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⁴⁸⁾」에 의하여 사고이월 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조치한 토지매입비(393억 3,600만원)등과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는 시점인 10~12월에 교부되거나 사업기간이 2016년도 중으로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185억 7,600만원)이 주요인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795억 5,000만원)의 29.4%, 233억 6,100만원, ② 토지매입 지연 49.4%, 393억 3,600만원, ③ 사업추진 지연 11.1%, 87억 9,700만원, ④ 기타 10.1% 80억 5,60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29〉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총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토지매입 지연	사업추진 지연	기타
건수	113	68	6	14	25
이월액	79,550	23,361	39,336	8,797	8,056
비율	100.0	29.4	49.4	11.1	10.1

47)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48)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2015.8.)」 p3
 □계약의 체결 및 이월 업무처리요령
 ○연도 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를 제출받아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68건, 233억 6,100만원)은 10~12월에 교부되거나 사업기간이 2016년도 중으로 지정되어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64건, 185억 7,600만원)과 수송초 복합화⁴⁹⁾ 사업을 위한 강북구청 전입금 중 1차 공사 미완료로 집행하지 못한 2차 공사 소요액(47억 1,300만원)이 대부분임

〈표 4-30〉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재원구분	사업명	건수	명시이월액
합 계		68	23,361
특별교부금	교육사업비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64	18,57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강북구청)	소 계	2	4,713
	수송초 복합화(주차장, 도서관)	1	3,306
	수송초 복합화(체육관, 도서관)	1	1,407
자체재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	22
	가재울초 신설	1	50

49) 수송초 복합화 사업

- 개요 : 강북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북구 번1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과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설치
- 총 사업기간 : 2015.7.~2017.7.
- 총 사업비 : 152억 1,300만원
 - 교육청 40억 3,200만원, 서울시 77억 4,700만원, 강북구 34억 3,400만원
- 시설현황 : 연면적-10,635.89㎡, 지상 3층(체육관, 급식시설, 정보도서관), 지하 2층(주차장 185면)

-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6건, 393억 3,600만원)은 모두 자체재원으로 가재울초·금호고·녹원초 신설 및 송신초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재동초 사유지 매입비이며, 전체 명시이월액(795억 5,00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49.4% 임

〈표 4-31〉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9,336	
학교신증설	가재울초 부지 매입	8,643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20%) 집행 불가능
	송신초 부지 매입	1,798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20%) 집행 불가능
	금호고 부지 매입	26,525	조합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및 부지 계획고 하향 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계약체결 불가능
	녹원초 신축(시설비)	1,480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사업사업계획 사전검토(50일) 및 디자인공모학교 설계용역(8개월 소요)에 따른 연내 추진 어려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동초 사유지 매입	150	토지소유자와 민사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청구, 민사조정신청 등) 진행 예정으로 판결 후 추진 예정
	재동초 사유지 장기 사용료	740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14건, 87억 9,700만원) 중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자치구청의 소득재산조사가 지연되어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원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연도 내에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였으며, 창덕여중·경신고·명신초의 시설사업비는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임

〈표 4-32〉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3,341	7월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 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	1,170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의견반영 및 설계과정 참여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사업 집행 불가능
경신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	1,941	문화재 승인, 설계완료 후 시설관리사업소에 설계 검토의뢰 완료 및 입찰준비 및 공고, 공사업체 계약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연도 내 공사 집행이 어려움
명신초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1,393	사업변경 ^{주1)} 으로 인한 재설계용역기간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주 1. 기존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을 특별교실만 증축하는 것으로 학교측에서 요구하여 재설계 필요

7.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50)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382건, 1,422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1.7%이며, 직전 회계연도(82건, 417억 2,900만원)보다 300건, 1,005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4-33〉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사고이월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5	8,284,118	382	142,267	1.7	100,538	240.9
2014	7,915,133	82	41,729	0.5	△62,296	△59.9
2013	8,256,035	181	104,025	1.3		

50)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이 직전 회계연도 사고이월액(417억 2,900만원) 보다 1,005억 3,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검토하면,
 - 사고이월의 주 대상인 시설사업비⁵¹⁾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2015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은 1,369억 7,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409억 2,600만원)보다 960억 4,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5,204억 1,500만원)가 직전 회계연도(2,470억 6,200만원)보다 2,733억 5,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4-34〉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A)	2014(B)	비교증감(A-B)
사고이월액	142,267	41,729	100,538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136,975	40,926	96,049
최종예산액 중 시설사업비	520,415	247,062	273,353

- 시설사업비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세밀하게 산출하여 관행적으로 세출재원을 선점하기 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세출재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1) 시설사업비 :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등 7개 세부사업

- 또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⁵²⁾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지출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처리되는 반면,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의 지출액은 사고이월액이 아니었으므로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에 2016년 2월 말까지 집행액(514억 3,500만원, 36.1%)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사고이월액 증가 요인으로 판단됨

〈표 4-35〉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 중 2016년 2월말 집행완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A)	2016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B)	비율(B/A)
건 수	382	161	42.1
금 액	142,267	51,435	36.1

52)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1) 사고이월 발생사유

-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공사(납품) 지연이 전체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의 45.4%, 645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고, ② 계약기간 미도래가 31.4%, 446억 200만원, ③ 사업추진 기간부족 10.3%, 147억 1,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6〉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총계	① 공사(납품) 지연	② 계약기간 미도래	③ 사업추진 기간부족	④ 추경편성 사업	⑤ 동절기 공사중지	⑥ 기타
건수	382	192	44	46	64	15	21
이월액	142,267	64,592	44,602	14,711	11,258	5,343	1,761
비율	100.0	45.4	31.4	10.3	7.9	3.8	1.2

1) 공사(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공사(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645억 9,2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가칭 금호고 및 왕십리고 신설사업인 바,

〈표 4-37〉 공사(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개교예정)
					비율	
가칭) 왕십리고 신설	소 계	31,831	3,426	28,404	89.2	2017. 3.
	토지매입비	27,200	3,413	23,787	87.5	
	건설비	4,631	13	4,617	99.7	
가칭) 금호고 신설	건설비	3,302	596	2,705	81.9	

- 가칭 왕십리고등학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하왕십리3동 소재) 신설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학교군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직전 회계연도에는 재개발조합 내 이견발생 및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196억 6,300만원)의 97.1% (191억 200만원)를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처리된 반면,
 - 2015회계연도에는 토지 매매 계약(2015.12.11.) 및 공사 계약 (2015.9.21.)을 체결하고 토지매입비 예산현액(272억원)의 87.5%(237억 8,700만원), 공사비 예산현액(46억 3,100만원)의 99.7%(46억 1,700만원)를 각각 이월한 바,

- 2013연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197억 2,900만원)된 후 조합의 내분 및 부지매수 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에서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 바, 향후 이월 발생을 감소시켜 적기에 개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38〉 가칭 왕십리고 신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개교예정)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왕십리고 신설 (2017.3)	2015	소 계	31,831	31,831	3,426	0	28,404	1
		토지 매입비	27,200	27,200	3,413	0	23,787	0
		건설비	4,631	4,631	13	0	4,617	1
	2014	소 계	0	19,663	561	0	0	19,102
		토지 매입비	0	14,958	0	0	0	14,958
		건설비	0	4,705	561	0	0	4,144
	2013	소 계	19,729	19,729	4	19,129	534	62
		토지 매입비	14,958	14,958	0	14,958	0	0
		건설비	4,771	4,771	4	4,171	534	62

- 가칭 금호고등학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금호1가동 소재) 신설은 금호옥수지역 재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 학교군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65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298억 2,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나,

- ① 조합측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② 계획지반고⁵³⁾ 하향 조정에 대한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토지매입비 265억 2,5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토지매입비의 부대경비에 해당하는 건설비가 예산현액(33억 200만원)의 81.9%, 27억 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39〉 가칭 금호고 신설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개교예정)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금호고 신설 (2017.3)	2015	소계	29,827	29,827	597	26,525	2,705	0
		토지 매입비	26,525	26,525	0	26,525	0	0
		건설비	3,302	3,302	597	0	2,705	0

- 일반적으로 선행경비가 지출원인행위 되지 못하여 명시이월되었다면 후행되는 부대경비도 지출원인행위 될 수 없어 명시이월 외 당해 연도 예산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선행경비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 전액은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토지 매입 후 집행되어야 할 건설비는 오히려 사고이월이 발생된 바,

53) 계획지반고(計劃地盤高) :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 해수면으로부터의 수직고로 표시됨

- 동 사업의 특수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여도 명시이월된 선행경비가 있으면 후행경비는 사고이월 될 수 없음에도 사고이월에 대한 판단을 과도하게 남용한 사례로 판단되어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신설사업의 특성상 외부적인 여건이 사업추진의 핵심일 수 밖에 없어 건설비를 토지매입비와 같이 명시이월 할 경우 조달청에 계약의뢰 후 낙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 바, 학교신설사업의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와 같은 선·후행경비의 경우 이월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은 학사일정, 급식 일정,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한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겨울 방학에 착공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순연되어 사고이월된 바,
 - 비록 학교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 시기가 방학 임에는 틀림없으나, 학교 현장의 요구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점의 괴리가 빈번하여 구조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사고이월보다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현장의 집행시점 요구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446억 2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모두 시설사업비로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2015년도에 체결한 계약기간(준공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표 4-40〉 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주1)}
					비율	
학교신증설	가재울초 신설	16,703	9,383	6,663	39.9	2015.1.~2016.3.
	가칭)구심초 신설	3,356	273	2,781	82.9	2015.6.~2016.9.
	가칭)장원유치원 신설	5,952	1,487	4,449	74.7	2015.2.~2016.4.
	가칭)장원초 신설	16,727	9,672	7,049	42.1	2015.1.~2016.3.
	가칭)미사리초 신설	3,356	534	2,782	82.9	2015.2.~2016.6.
	한울중(이전) 신축	14,678	4,853	9,628	65.6	2015.1.~2016.3.
학교시설 증개축	수송초 복합화 시설 증축	3,548	1,967	1,581	44.6	2015.7.~2016.5.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거여초 노후교실 개축	12,100	9,845	2,235	18.5	2015.2.~2016.5.
	한성과학고 기숙사 증축	3,384	646	2,726	80.6	2015.2.~2016.2.

주 1. 2015년도 계약기간

- 서울시교육청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추계일 수 밖에 없고, 편성의 부정확성은 물론 사업비의 우선 확보 목적으로 사료되는 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고이월하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147억 1,1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체육관 증축, 기숙사 증축 등 모두 시설사업임

〈표 4-41〉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비고
				비율		
등촌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254	41	1,211	96.6	2015.2.~2016.6.	본예산
언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531	28	1,503	98.2	2015.3.~2016.7.	
탑산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565	1,336	1,229	47.9	2015.1.~2016.2.	
신남중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3,364	1,330	2,033	60.4	2015.3.~2016.5.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기숙사 증축	3,900	1,837	2,006	51.4	2015.2.~2016.3.	

- 상기 시설사업은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설계협의를, 설계, 일상감사, 입찰, 계약, 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등촌초·언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은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된 바,

- 급식시설과 체육관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급식시설 증축비⁵⁴⁾와 체육관 증축 설계비를 확보하고 증축 건물 전체적인 설계를 실시하면서 설계기간이 소요되어 이후 계약체결, 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급식시설과 체육관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의 대부분을 이월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없었던 물량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됨
- 2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과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54) 등촌초 및 언남중 급식시설(급식실·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체육관 증축			
	2015 본예산	계	2015본예산	2015 추경	2016 본예산
등촌초	1,254 (설계비 및 시설비)	2,713	70 (설계비)		2,643 (시설비)
언남중	1,531 (설계비 및 시설비)	2,596	70 (설계비)	50 (시설비)	2,476 (시설비)

4)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12억 5,8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급식실 또는 체육관 증축사업임

〈표 4-42〉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업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시흥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648	0	1,436	87.1	추경예산
월촌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1,266	14	1,251	98.8	

- 시흥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와 월촌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7월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설계, 입찰 등을 거쳐 12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 됨에 따라 각각 14억 3,600만원과 12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임
- 추경예산의 특성상 시설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필요시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한 명시이월을 승인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

5)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53억 4,3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체육관 증축 사업임

〈표 4-43〉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128	348	1,776	83.5	본예산

-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 중 17억 7,600만원(예산현액의 83.5%)이 이월된 바,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회계연도 내 마무리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됨
 - 총 사업기간이 2개년도 이상이라면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고이월하는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2015회계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방일초 석면제거, 고명초·구로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으로 직전회계연도 말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명시이월한 후 2015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사례임
-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후 명시이월하였다면 다음 회계연도에서 집행 완료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이들 모두 각각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공사 지연, 특별교부금 부족으로 서울시 전입금 추가 확보 후 집행, 학사일정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방학 중 공사 진행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례의 경우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재정법」⁵⁵⁾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44〉 직전회계연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완료예정)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 센터 설립 (2016.6.)	2015	건설비	0	1,018	273	0	737	0
	2014	건설비	1,018	1,018	0	1,018	0	0
방일초 석면제거 (2016.1.)	2015	건설비	0	447	0	0	350	97
	2014	건설비	447	447	0	447	0	0
고명초급식실 신증축 및 학생식당 보수 (2016.2.)	2015	건설비	0	1,107	789	0	274	44
	2014	건설비	1,107	1,107	0	1,107	0	0
구로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016.1.)	2015	건설비	0	1,581	1,024	0	556	1
	2014	건설비	1,581	1,581	0	1,581	0	0

(3) 반복적 사고이월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최초 예산편성 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이고 예산과목은 건설비와 토지매입비임

- 가재울초 신설 및 거여초 교사 개축 사업의 경우 최초 예산편성 연도인 2012회계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건설비 과목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되고 이후 사고이월이 반복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객관적으로 2개연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물량일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고이월하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5〉 반복적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완료예정)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가재울초 신설 (2016.3.)	2015	토지 매입비	23,216	23,216	14,573	8,643	-	-
		건설비	16,703	16,884	9,524	50	6,663	647
	2014	토지 매입비	0	20,000	20,000	-	-	-
		건설비	2,000	5,133	4,857	-	181	95
	2013	토지 매입비	20,000	20,000	-	20,000	-	-
		건설비	3,300	4,022	886	-	3,133	3
	2012	토지 매입비	39,133	39,133	-	-	-	39,133
		건설비	1,056	1,056	269	-	722	65
거여초 교사 개축 (2016.5.)	2015	건설비	12,100	13,132	10,819	-	2,235	78
	2014	건설비	5,300	8,453	7,415	-	1,032	6
	2013	건설비	3,200	3,680	527	-	3,153	-
	2012	건설비	638	638	4	-	480	154
한울중 (이전)신설 (2016.3.)	2015	건설비	14,677	17,092	7,268	-	9,628	196
		학교회계 전출금	223	223	223	-	-	-
	2014	건설비	2,900	2,900	485	-	2,415	-
수송초 강담 검 체육관증축 (복합시설포함) (2017.7.)	2015	건설비	5,081	8,261	1,966	4,714	1,581	-
	2014	건설비	3,200	3,200	20	2,681	499	-

(4) 원인행위액 전액 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액 전액(100%)이 사고이월된 사업은 110건, 134억 8,9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의 9.5%를 차지함
 - 이 중에서 특히 본예산임에도 지출원인행위액 전액(100%)이 사고이월된 사업은 20건, 30억 1,500만원으로 검토됨

- 인정도서 본심사위원 수당(1,500만원)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12~2월에 추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제4호⁵⁶⁾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⁵⁷⁾’에 따르면 수당액은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에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지출 결정하는 시점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는 것임
 - 따라서 인정도서 본심사위원수당의 경우 다음연도 1~2월에 이루어진 본심사에 대한 수당의 지출원인행위는 다음연도 1~2월에 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가 다음연도 1~2월이라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3. 생략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7)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에 의한 경비> 2. 수당액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액

○ 그 외의 경우 사고이월된 사유가 업무진행 절차의 특수성, 학사(급식) 일정의 특수성, 공사의 특수성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여도 본예산임에도 원인행위액 전액을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⁵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집행을 위한 과정일 뿐 사고이월로 예산을 선점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표 4-46〉 본예산 편성사업 중 원인행위액 전액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이월사업명	원인 행위액	사고 이월액	사유	비고
	합 계	3,015	3,015		
1	인정도서 본심사위원 수당	15	15	사업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임	사업기간이 2개연도에 걸침
2	서울일반노조(교육공무직) 단체 사무실임차료	323	323	노조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처리시간 필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진행 차질로 사업 추진 지연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109	109	도시계획결정(변경) 입안 지연	
4	교수학습자료 제작및보급	46	46	조달요청계약 입찰 공고 지연으로 인한 계약일 및 납품일 지연	
5	세명컴퓨터고 기능영재반 특별교실 개선	120	120	건축사 설계포기로 인한 재설계로 인한 기한 연장	
6	송과중 파라펫 방수	47	47	시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중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병행 추진 중	

5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연번	이월사업명	원인 행위액	사고 이월액	사유	비고	
7	선일여고 냉난방개선	200	200	학습공간 부족으로 인해 3학년이 없는 겨울방학 공사 시행	학사일정에 따라 방학 중 공사 실시로 공사추진 지연	
8	서서울생과고 창호개선 (교사2동 교실출입문개선)	19	19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9	동북고 교사동 지하 LED 교체	82	82	소음 및 석면공사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방학 중 실시		
10	동북중 식당개선	30	30	학기 중 급식 실시로 인해 겨울방학 중 공사		
11	서울영상고 냉난방개선	239	239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중 공사 진행		
12	한광고 냉난방개선	321	321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시공		
13	진선여고 오븐기외3종구입	58	58	급식 종료 후 겨울방학 중 설치		
14	성보고 본관동 외벽개선	446	446	학생 수업 및 교육활동 지장이 우려되어 겨울방학 중 시행		
15	신양초 본관동 외부창호개선	513	513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중 공사 시행		
16	한대부중 급식실 연결통로 설치	119	119	학생들 주 이동통로로 학기 중 공사 불가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17	번동초 방화문 설치	34	34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18	동대부여고 셋별관 냉난방기 교체	150	150	셋별관 건물은 3학년 교실로 수능 시험 이후 공사 예정		
19	수도전기공고 본관 외벽 도장	124	124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
20	인수중 강당점 체육관 증축 (감리비)	20	20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1,256억 9,600만원) 보다 1,934억 800만원 증가한 3,191억 400만원임

〈표 4-47〉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 (A)	8,284,118	100.0	7,915,133	100.0	
세입결산액(수납액) (B)	8,468,772	102.2	7,925,316	100.1	
세출결산액(지출액) (C)	7,927,851	95.7	7,741,815	97.8	
잉여금(차인잔액) (D=B-C)	540,921	6.5	183,501	2.3	
다음연도 이월액	소 계(E)	221,817	2.7	56,027	0.7
	명시이월	79,550	1.0	14,298	0.2
	사고이월	142,267	1.7	41,729	0.5
	계속비이월	0		0	
보조금집행잔액(F)	0		1,777	0.0	
지방채상환액(G)	0		0		
순세계잉여금 (H=D-E-F-G)	319,104	3.9	125,696	1.6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에 기인하는 바, 서울시 제1회 추경(2015.8.4. 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874억 2,800만원 (지방세분 224억 4,200만원, 지방교육세분 1,649억 8,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임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⁵⁹⁾에 근거하여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초과 수납된 전입금분(1,874억 2,8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순세계 잉여금은 1,316억 7,600만원으로 사료됨
- 다만, 결산결과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이 반영되지 않은 바⁶⁰⁾, 실제 추경예산을 통해 세출예산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표 4-48〉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A)	전년대비 증감(B)	증감률 (B/A)	본예산(C)	반영비율 (C/A)	추경예산 (D)
2015	319,104	193,408	153.8	187,428	58.7	131,676
2014	125,696	37,202	42.0	0	0.0	125,696
2013	88,494	△215,890	△70.9	250,000	282.5	△161,506

5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6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501 보조금 집행 현황을 통해 산출한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2,900만원 (국고보조금 20억 3,100만원, 시도보조금 46억 9,800만원)이나 각급학교로 교부한 학교회계전출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집행잔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보조금집행잔액을 “0”으로 반영한 것임

9. 지방교육채 관련

-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조 1,88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3,732억 2,500만원) 보다 8,150억 6,900만원 (218.3%) 증가하였음

〈표 4-49〉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자 납부액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373,225	815,069	0	815,069	1,188,294	15,238
2013 학교신설	131,082	0	0	0	131,082	4,009
2014 학교신설 등	59,514	0	0	0	59,514	1,893
09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차환	182,629	0	0	0	182,629	5,862
교원명예퇴직	0	256,174	0	256,174	256,174	3,474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0	268,763	0	268,763	268,763	0
교부금차액보전	0	137,722	0	137,722	137,722	0
2015 학교신설	0	152,410	0	152,410	152,410	0

- 2015회계연도 중 발행된 지방교육채는 총 8,150억 6,900만원으로 ① 교원명예퇴직 수당 2,561억 7,400만원, ②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비 2,687억 6,300만원, ③ 교부금의 차액보전 1,377억 2,200만원, ④ 2015년 학교 신·증설비 중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524억 1,000만원을 차입한 것임

- 당해연도 중 상환된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2015회계연도 분 이자 152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15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향후 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이나,

- 지방교육채의 누적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기둔화로 세입 여건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표 4-50〉 지방교육채 잔액 규모(2012~2016년도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지방채 잔액		1,567,777	1,188,294	373,226	311,222	238,133
증감	증감액	379,483 ^{주1)}	815,068	62,004	73,089	-
	증감률	31.9	218.3	19.9	30.6	-

주 1. 2016년도 증감액 3,794억 8,300만원 = 발행액 4,231억 7,700만원 - 상환액 436억 9,400만원 (2016년도 본예산 기준)

10.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검토

- 2015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⁶¹⁾학교(특수학교 제외) 270교⁶²⁾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644억 8,000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26.0%인 16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부담률(28.0%) 보다 2.0%p 감소하였음

〈표 4-51〉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

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소요액(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B/A)
2015	270	64,480	16,787	26.0
2014	271	61,847	17,304	28.0
2013	271	60,159	17,663	29.4

〈표 4-52〉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개교, %)

학년도	지원대상 학교			전액미부담	일부부담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015	270	107	163	33 (12.2)	197 (73.0)	40 (14.8)
2014	271	107	164	26 (9.6)	205 (75.6)	40 (14.8)
2013	271	107	164	21 (7.7)	207 (76.4)	43 (15.9)

61) 재정결함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은 당해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

62) 총 309개교의 사립 중·고등학교 중 39개교[(국제중 2교, 특목고 10교, 자사고 25교, 일반고 1교(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 특성화고 1교(재정자립이행학교인 신진자동차고)] 제외한 270개교

○ 사학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 즉,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⁶³⁾ 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사립학교에서는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감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바, 법인 예·결산서와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기초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표 4-53〉 사립 중·고 의무부담금 미부담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학년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2014	169	8,867	1,116	64	2,364	300	105	6,503	816
2013	167	7,751	671	61	2,064	183	106	5,687	488
2012	160	7,080		58	1,881		102	5,199	

주. 2015학년도 재정결함지원금은 2016년 7월에 최종 정산함에 따라 2015학년도 미작성

63) 「201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 (2015.3. 학교지원과) 발췌
 -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4대보험) 중 의무부담금(정규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할 시에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

V. 재무제표

1. 개요

-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⁶⁴⁾ 및 제53조⁶⁵⁾에 의거 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말의 재정상태와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확정하여 작성하는 결산서의 일부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5회계연도 말 자산은 14조 3,273억 5,500만원, 부채는 2조 1,623억 5,0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1,650억 500만원이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말 순자산(12조 2,730억 4,500만원) 보다 △1,080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 2015회계연도의 수익은 7조 8,988억 3,300만원이며, 비용은 8조 68억 7,300만원인 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1,080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운영차액(△332억 9,700만원) 보다 △747억 4,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5-1〉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15	14,327,355	2,162,350	12,165,005	7,898,833	8,006,873	△108,040
2014	13,594,604	1,321,559	12,273,045	7,791,395	7,824,692	△33,297
증 감	732,752	840,791	△108,040	107,438	182,181	△74,743

64)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65) 「지방재정법」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5-2〉 재정상태표(요약)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자산 총계	14,327,355	100.0	13,594,604	100.0	732,752
I. 유동자산	925,862	6.5	386,937	2.8	538,925
II. 투자자산	268,904	1.9	267,877	2.0	1,027
III. 유형자산	13,124,549	91.6	12,932,200	95.2	192,349
IV. 무형자산	2,064	0.0	2,896	0.0	△832
V. 기타비유동자산	5,976	0.0	4,694	0.0	1,28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4,327,355	100.0	13,594,604	100.0	732,751
부채 총계	2,162,350	15.1	1,321,559	9.7	840,791
I. 유동부채	190,568	1.3	76,780	0.6	113,788
II. 장기차입부채	1,968,919	13.8	1,243,739	9.1	725,180
III. 기타비유동부채	2,863	0.0	1,040	0.0	1,823
순 자산	12,165,005	84.9	12,273,045	90.3	△108,040
I. 고정순자산	11,650,099	81.3	11,644,850	85.7	5,249
II. 일반순자산	514,906	3.6	628,195	4.6	△113,289

- 2015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총자산**은 14조 3,273억 5,5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91.6%, 13조 1,245억 4,900만원을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이 전체 자산의 6.5%, 9,258억 6,200만원 등임

- 2015회계연도 말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말 자산(13조 5,946억 400만원) 보다 7,327억 5,200만원(5.4%) 증가한 것으로
 - 주요 증가내역은 ‘유동자산’ 중 ①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3,374억 2,000만원, ② 서울시로부터의 미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증가 1,675억 1,100만원⁶⁶⁾과 ③ ‘유형자산’ 중 학교신설 및 구)서울명수학교의 공립전환(다원학교)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3,960억 5,900만원에 따라 증가된 것임
 - 주요 감소내역은 ‘유형자산’ 중 건물·집기비품 등 6개 항목의 감가상각⁶⁷⁾누계액 증가 2,283억 5,100만원, ‘유동자산’ 중 잡수입 등 기타 미수채권의 감소 △10억 6,0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66) 미수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연도별 내역(2015~20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증감 (A-B)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A)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B)	
합 계	2,992,773	2,641,584	351,189	2,580,821	2,397,143	183,678	167,511
지방교육세전입금	1,515,687	1,389,076	126,611	1,304,984	1,162,440	142,544	△15,933
시도세전입금	1,208,495	1,008,154	200,341	1,012,395	971,261	41,134	159,20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4,549	24,549	0	17,785	17,785	0	0
담배소비세전입금	244,042	219,805	24,237	245,657	245,657	0	24,237

67) 감가상각 :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 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하여 적용함(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입목 등 제외)

○ 2015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2조 1,623억 5,000만원으로 교원명예 퇴직, 학교신설 등의 지방채 및 BTL 사업 상환액으로 구성된 장기 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91.1%, 1조 9,689억 1,900만원이며, 유동부채가 8.8%, 1,905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0.1%, 28억 6,300만원임

〈표 5-3〉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부채총계	2,162,350	100.0	1,321,559	100.0	840,791
I.유동부채	190,568	8.8	76,780	5.8	113,788
1. 일반미지급금	55,751	2.6	0	0.0	55,751
2. 보조금반환미지급금	6,730	0.3	1,777	0.1	4,953
3. 미지급이자비용	3,173	0.1	680	0.1	2,493
4. 수업료선수금	20,568	1.0	23,119	1.7	△2,551
5.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0	0.0	1,809	0.1	△1,809
6. 임대료선수금	372	0.0	335	0.0	37
7. 사용료선수금	937	0.0	972	0.1	△35
8. 자산매각선수금	916	0.0	2,073	0.2	△1,157
9.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43,694	2.0	0	0.0	43,694
10. 유동성민자리스부채	44,614	2.1	43,611	3.3	1,003
11. 세외예수금	13,813	0.6	2,404	0.2	11,409
II.장기차입부채	1,968,919	91.1	1,243,739	94.1	725,180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875,837	40.5	373,225	28.2	502,612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68,763	12.4	0	0.0	268,763
3. 민자리스부채	824,319	38.1	870,514	65.9	△46,195
III.기타비유동부채	2,863	0.1	1,040	0.1	1,823
1. 퇴직급여충당부채	1,339	0.1	842	0.1	497
2. 세외장기예수금	1,524	0.1	198	0.0	1,326

- 2015회계연도 말 부채 규모는 직전회계연도 말 부채(1조 3,215억 5,900만원) 보다 63.6%, 8,407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 부채별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장기차입부채**⁶⁸⁾가 직전 회계연도(1조 2,437억 3,900만원) 보다 7,251억 8,000만원(58.3%) 증가하였고, **유동부채**⁶⁹⁾는 직전 회계연도(767억 8,000만원) 보다 1,137억 8,800만원(148.2%)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장기차입부채’ 중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채의 발행으로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7,713억 7,500만원⁷⁰⁾이 증가하였고, ‘유동부채’ 중 구심초 외 2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미지급금(일반미지급금) 557억 5,100만원,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⁷¹⁾ 4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음
 - 주요 감소내역은 ‘장기차입부채’ 중 BTL사업에 대한 2015년도분 원금상환으로 민자리스부채⁷²⁾ △461억 9,500만원 감소, ‘유동부채’ 중 수업료 선수금⁷³⁾ 규모 △25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음

68) 장기차입부채 : 차입거래로부터 발행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

69)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

70) 2015회계연도 중 발행 지방교육채 8,150억 6,900만원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전환액 436억 9,400만원 (2013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2016년도 상환예정액) = 7,713억 7,500만원

71)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경과로 인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2016년도 상환예정액)

72) 민자리스부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차료의 현재가치로 지급기한 1년을 초과하는 임차료 (서울시교육청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운영)

73) 수업료선수금은 2015회계연도에 수취한 금액 중 2016. 1. 1 이후에 속하는 금액(2016년 1~2월분 수업료)으로 기말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여 부채로 분류됨

○ 부채규모를 통해 교육청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면,

-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 비율로 나타나는 부채비율은 17.7%로 직전 회계연도(10.7%) 보다 7.0%p 증가한 바, 부채비율이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자원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채의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아 교육청의 부채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유동비율⁷⁴⁾의 경우 485.8%로, 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 보다 2.3배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의 증가폭(2.4배)이 이를 상회하고 있어 유동비율은 직전회계연도 (503.9%) 보다 18.1%p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지방교육채 상환 기간 도래로 유동비율의 감소가 예측되는 바, 유동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5-4〉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부채비율	순자산(A)	12,165,005	12,273,045	△108,040
	부 채(B)	2,162,350	1,321,559	840,791
	부채비율(B/A)	17.7	10.7	7.0
유동비율	유동자산(C)	925,862	386,937	538,925
	유동부채(D)	190,568	76,780	113,788
	유동비율(C/D)	485.8	503.9	△18.1

74) 유동비율 :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p11)

-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2조 2,730억 4,500만원) 보다 △1,080억 4,000만원 감소한 12조 1,650억 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자산은 7,327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8,407억 9,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3.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용 활동결과를 나타냄

〈표 5-5〉 기능별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	7,898,833	100.0	7,791,395	100.0	107,438
I. 이전수익	7,577,838	95.9	7,414,932	95.2	162,906
중앙정부 이전수익	4,512,603	59.6	4,616,847	62.3	△104,24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948,191	38.9	2,669,424	36.0	278,767
기타이전수익	117,044	1.5	128,661	1.7	△11,617
II. 자체수익	161,722	2.1	170,325	2.2	△8,603
III. 기타수익	159,273	2.0	206,138	2.6	△46,865
비용 총계	8,006,873	100.0	7,824,692	100.0	182,181
I. 인적자원운용	4,166,082	52.0	3,898,927	49.8	267,155
II. 교수-학습활동지원	315,919	3.9	341,929	4.4	△26,010
III. 교육복지지원	917,912	11.5	840,867	10.8	77,045
IV. 보건/급식/체육활동	321,966	4.0	309,763	4.0	12,203
V. 학교재정지원관리	1,655,996	20.7	1,568,703	20.0	87,293
VI.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6,798	0.6	33,750	0.4	13,048
VII. 평생교육	13,971	0.2	12,460	0.2	1,511
VIII. 직업교육	2,596	0.0	3,673	0.0	△1,077
IX. 교육행정일반	41,216	0.5	64,697	0.8	△23,481
X. 기관운영관리	34,908	0.4	36,786	0.5	△1,878
XI. 지방채상환및리스크	76,812	1.0	84,269	1.1	△7,457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12,697	5.2	628,868	8.0	△216,171
운영 차액	△108,040		△33,297		△74,743

- 2015회계연도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7조 7,913억 9,500만원) 보다 1,074억 3,800만원 증가한 7조 8,988억 3,300만원으로
 - 이전수익이 총수익의 95.9%인 7조 5,778억 3,800만원, 자체 수익은 2.1%, 1,617억 2,200만원, 기타수익은 2.0%, 1,592억 7,300만원임
 - 주요 증가내역은 ‘이전수익’ 중 서울시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787억 6,700만원 증가, ‘기타 수익’ 중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 기부채납에 따른 자산수증수익⁷⁵⁾ 572억 7,500만원의 증가 등임
 - 주요 감소내역은 ‘이전수익’ 중 중앙정부이전수익 △1,042억 4,400만원 감소, 각급학교의 재산 및 물품 취득에 따른 학교회계의 전입금수익 △106억 5,300만원 감소, ‘기타수익’ 중 전년도 대비 대규모 자산매각 사유 미발생으로 자산처분이익 △505억 8,600만원 감소 등임
-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7조 8,246억 9,200만원) 보다 1,821억 8,100만원 증가한 8조 68억 7,300만원으로
 - 인적자원운용 4조 1,660억 8,200만원(52.0%), 학교재정지원 관리 1조 6,559억 9,600만원(20.7%), 교육복지지원 9,179억 1,200만원(11.5%), 기타비현금지출비용⁷⁶⁾ 4,126억 9,700만원 (5.2%) 등임

75) 자산수증수익 : 국가나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생기는 수익

76)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해 발생한 비용(예.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 주요 증가내역은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의 증가 2,638억 1,800만원, 누리과정지원비 증가 852억 700만원, 공·사립학교운영비 등 증가 872억 9,3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교육채 상환 △1,801억 5,400만원 감소⁷⁷⁾, 선거관리비용 미발생에 따라 △253억 600만원 감소, 교과서 지원·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260억 1,000만원 감소 등임
- 결과적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1,080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32억 9,700만원) 대비 △747억 4,300만원(△224.4%) 감소한 것임
- 재정운영표를 토대로 재정의 자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면,

〈표 5-6〉 자주성 및 효율성 지표(재정자립도 및 경상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재정자립도 (자주성측정)	자체수익(A)	161,722	170,325	△8,603
	총수익(B)	7,898,833	7,791,395	107,438
	재정자립도(A/B)	2.0	2.1	△0.1
경상경비 비율 (효율성측정)	경상경비(C)	7,926,044	7,523,099	402,945
	총비용(D)	8,006,873	7,824,692	182,181
	경상경비비율(C/D)	98.9	96.1	2.8

77) 2014회계연도 중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공공자금관리기금, 연 4.85% 고정금리) 미상환잔액 1,801억 3,900만원을 저금리(금융기관, 3.18% 변동금리)로 차환하기 위해 조기상환함에 따라 지방교육채 상환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801억 5,400만원 감소함

-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 비율로 나타나는 재정자립도는 2.0%로 직전 회계연도(2.1%) 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성질별 재정운영표⁷⁸⁾의 경상경비⁷⁹⁾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경상경비비율은 98.9%로 직전회계연도(96.1%) 보다 2.8%p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78)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비용 총계	8,006,873	100.0	7,824,692	100.0	182,181
I. 인건비	3,408,699	42.6	3,257,394	41.6	151,305
II. 복리후생비	744,290	9.3	631,734	8.1	112,556
III. 운영관리비	628,571	7.9	660,905	8.4	△32,334
IV. 이전비용	3,144,484	39.3	2,973,067	38.0	171,417
V. 기타비용	80,829	1.0	301,592	3.9	△220,763

79) 경상경비 : 인건비+복리후생비+운영관리비+이전비용

4.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⁸⁰⁾의 증감 내역을 나타냄

〈표 5-7〉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기말순자산	12,165,005	100.0	12,273,045	100.0	△108,040
고정순자산					
I.전기이월고정순자산	11,644,850		11,691,936		△47,086
II.고정순자산의증가	520,032		675,460		△155,428
III.고정순자산의감소	514,783		722,546		△207,763
IV.차기이월고정순자산	11,650,099	95.8	11,644,850	94.9	5,249
특정순자산					
I.전기이월특정순자산	0		0		0
IV.차기이월특정순자산	0		0		0
일반순자산					
I.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628,195		614,406		13,789
II.운영차액	△108,040		△33,297		△74,743
III.일반순자산의증가	514,783		722,546		△207,763
IV.일반순자산의감소	520,032		675,460		△155,428
V.차기이월일반순자산	514,906	4.2	628,195	5.1	△113,289

80)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 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기말순자산**⁸¹⁾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자산에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여 산출하는 바,
- 2015회계연도의 순자산은 12조 1,650억 500만원으로 차기이월 고정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95.8%(11조 6,500억 9,900만원),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이 4.2%(5,149억 600만원)을 차지하며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없음
 - **고정순자산**의 경우, 회계연도 중 학교신설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집기비품의 증가 등으로 5,200억 3,200만원이 증가하고, 당기감가상각액 3,036억 4,600만원⁸²⁾ 적용, 민간리스부채 등의 순증가 1,871억원⁸³⁾ 등으로 5,147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52억 4,900만원이 순증함에 따라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11조 6,500억 9,900만원으로 나타남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의 증감에 따라 △5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운영차액 △1,080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차기이월 일반순자산은 5,149억 600만원임

81) 기말순자산 = 차기이월고정순자산 + 차기이월특정순자산 + 차기이월일반순자산

8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p.57 가.유형자산명세서의 감가상각비

83) 민간리스부채 등의 순증가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내역	증감액	비고
1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증가	152,410	
2	유치원신설 지방교육채 증가	79,881	
3	민자리스부채 상환	△45,191	
	계	187,100	

VI.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⁸⁴⁾ 및 「지방재정법」 제43조⁸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
 - 2015년도 예비비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제2항⁸⁶⁾ 즉, 당초 예산의 100분의 0.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본예산액 7조 6,900억원의 0.1%인 77억 1,400만원이 편성된 바,
 - 편성된 예비비 중 36건⁸⁷⁾에 대해 26억 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음

84)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목류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정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00분의 0.1 이상을 계상

87) 예비비 지출건수 36건은 예비비 지출사업(학교명 등)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조서(세입·세출결산서 p431~441) 상 33건(예비비지출요구에 대한 승인건수)과 차이 있으나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동 지출건수(36건)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음

〈표 6-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예산편성액	2015	2014	2013
건 수	36	66	106
예산액(A)	7,714	7,905	9,988
지출결정액(B)	2,602	6,420	6,037
지출결정률(B/A)	33.7	81.2	60.4
지출액(C)	2,287	5,600	4,663
다음연도이월액(D)	163	375	946
집행잔액(B-C-D)	152	444	428

- 201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직전회계연도(64억 2,000만원) 대비 △38억 1,800만원 감소된 바,
- 2014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되었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출결정액 15억 8,600만원), 선거관리 비용(14억 5,600만원)과 같은 대규모의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의 지출결정 건수 및 금액이 감소(△41건, △18억 1,400만원)하였기 때문으로 검토됨

〈표 6-2〉 세부사업별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5		2014		증감
		건수	지출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	
합 계		36	2,602	67	6,420	△3,818
교육사업비	소 계	7	1,306	5	1,672	△366
	법무관리	3	730	1	173	557
	선거관리	0	0	1	1,456	△1,456
	재무회계관리	2	89	0	0	89
	학교보건관리	2	487	3	43	444
기관운영비	소 계	13	114	4	166	△52
	본청운영	0	0	2	134	△134
	교육지원청운영	11	71	0	0	71
	직속기관운영	2	43	2	32	11
시설사업비	소 계	16	1,182	57	2,996	△1,814
	학교급식환경개선	0	0	4	390	△39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	852	34	1,821	△969
	본청시설관리	1	276	0	0	276
	지역교육청시설관리	0	0	12	471	△471
	직속기관시설관리	1	54	7	314	△260
지방교육채상환		0	0	1	1,586	△1,586

-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검토하면,
-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소송비용 부담**은 가재울뉴타운3구역 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예비비 6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체육건강과 소관 **메르스 관련 인력 지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각급학교의 감염병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건 인력 미배치 사립유치원,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병원 인근 학교,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등 181명⁸⁸⁾을 배치하기 위해 예비비 4억 7,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3,100만원을 지출한 것임
- 총무과 소관 **학교보건진흥원 전기실 복구공사**는 2015년 11월 변압기 파열로 인해 건물 내 전원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진흥원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종합전산센터의 나이스·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통합 홈페이지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의 서비스중단이 우려되어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임시 전력 장치 설치 및 전기설비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4,400만원⁸⁹⁾을 지출하였음

88) 메르스 관련 인력지원 내역

(단위 : 교, 명)

학교급	합계		유치원		초·중·고							
					소계		보건교사미배치교		43학급이상 과대학교		병원인근학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합계	180	181	81	81	99	100	5	5	80	80	14	15
공립	77	78	0	0	77	78	0	0	64	64	13	14
사립	103	103	81	81	22	22	5	5	16	16	1	1

89) 학교보건진흥원 건물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된 시설로 2015년 12월 재난복구비를 신청하여 2016년 1월 예비비 지출액 2억 4,400만원 중 임시 전력장치 설치비용을 제외한 전기설비 복구비용 2억 100만원을 지급받음

〈표 6-3〉 예비비 지출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순	배정기관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결정일
1	서부교육 지원청	소송비용 부담	621	619	0	2	03.12.
2	체육건강과	메르스 관련 인력 지원	471	431	0	40	07.14.
3	총무과	학교보건진흥원 전기실 복구공사	276	244	0	31	11.19.
4	성북교육 지원청	석관고 외벽개선(치장벽돌)	168	141	0	27	02.04.
5	강서교육 지원청	화곡고 진입로 배수시설 등 개선	135	135	0	0	11.20.
6	서부교육 지원청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135	5	128	2	10.26.

○ 2015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 36건의 사업의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등 13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⁹⁰⁾」에 따른 예비비의 내재적 한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동부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11개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⁹¹⁾으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⁹²⁾가 신설됨에 따라

90)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76 예비비의 지출제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9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93호, 2014.12.24., 일부개정, 시행 2015.1.1]

기관운영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670만원(단, 중부교육지원청 446만원), 총 7,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800만원을 지출한 바,

- 동 조직개편으로 추가 소요되는 기관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기준성 경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와 실 수요액으로 산정되는 직원당 경비(특근매식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를 합한 1억 900만원으로
- 업무추진비인 기준성 경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제외한 직원당 경비 7,100만원만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것으로 사료됨⁹³⁾
- 그러나,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⁹⁴⁾」에서도 ‘신설되는 조직이 신규 인력의 충원이 아닌 기존 인력의 재편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신규조직의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해 자원 확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⁹⁵⁾,

9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조(교육지원국) ⑥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학교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지원 (이하 생략)

93)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중 기준성 경비 3,700만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됨

94)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행정자치부)」 p267~268 긴급 조직승인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련

- 동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초과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비비 지출결정보다는 이체·전용 등을 통한 예산확보 또는 기준성 경비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서울정진학교 외벽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균열·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비비 지출결정한 사업임
-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의 경우 10월 26일 지출결정하였으나, 방학 중 공사진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지출결정(1억 3,500만원)의 94.8%인 1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서울정진학교 외벽보수공사는 11월 13일 지출결정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출결정액(5,000만원)의 70.0%인 3,500만원을 이월한 바,

〈표 6-4〉 예비비 중 이월액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

배정기관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결정일	이월사유
				비율	잔액			
합 계		185	20	163		2		
서부교육 지원청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135	5	128	94.8	2	10.26..	동계방학 중 공사 진행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남부교육 지원청	서울정진학교 외벽 보수공사	50	15	35	70.0	0	11.13.	동계방학 중 공사 진행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95)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단위 : 명)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합 계	6,846	14	460	7,320	6,846	14	460	7,320	-	-	-	-
본 청	455	2	145	602	422	2	131	555	△33	-	△14	△47
직속기관	887	1	83	971	865	1	83	949	△22	-	-	△22
교육지원청	753	11	232	996	772	11	246	1,029	19	-	14	33
각급학교	4,751	-	-	4,751	4,787	-	-	4,787	36	-	-	36

-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Ⅶ.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96)에 의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97)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임
- 기금의 재원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는 2015회계연도 말 100억 2,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0억 3,000만원) 보다 △1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7-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0,030	△1	6,123	6,124	10,029

9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영한다.

*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15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운용결과

- 운용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153억 3,200만원에 수정계획조정분 1억 7,500만원을 합한 155억 7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은 운용계획현액 보다 6억 4,600만원 증가한 161억 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임

2. 검토 내용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15회계연도 운용수입규모는 16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79억 9,300만원) 보다 △10.2%, △18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7-2〉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A)	2014 (B)	증감(C=A-B)		
			증감률(C/B)		
전년도이월금(사고 등)	0	0	0	0	
수 입	소 계	16,153	17,993	△1,840	△10.2
	전입금 ^{주1)}	60	0	60	순증
	보조금 ^{주2)}	175	0	175	순증
	공제료수입	5,445	4,744	701	14.8
	예치금회수	10,030	12,450	△2,420	△19.4
	이자수입	261	626	△365	△58.3
	기타수입 ^{주3)}	182	173	9	5.2
지 출	소 계	16,153	17,993	△1,840	△10.2
	고유목적사업비 ^{주4)}	5,018	6,892	△1,874	△27.2
	인력운영비	719	741	△22	△2.9
	기본경비	387	330	57	17.2
	예치금	10,029	10,030	△1	0.0
다음연도이월액(사고 등) ^{주4)}	15	0	15	순증	

주 1. 전입금 :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주 2. 보조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서울시교육청 보조)

주 3. 기타수입 : 소방사업이익금 1억 2,000만원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200만원

주 4.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치금에 포함

- 예치금회수는 기금운영 상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인 100억 3,000만원이며 전체 수입의 62.1%를 차지함

- 공제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33.7%인 54억 4,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47억 4,400만원) 보다 7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표 7-3〉 공제료 수입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4		증감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계	1,126,538	5,445	1,172,759	4,744	△46,221	701
유치원	85,039	158	85,955	152	△916	6
초등학교	450,760	1,325	457,572	1,107	△6,812	218
중학교	264,237	1,564	287,114	1,430	△22,877	134
고등학교	309,090	2,229	321,782	1,921	△12,692	308
기타학교	16,783	164	20,053	132	△3,270	32
배움터지킴이	629	5	283	2	346	3

- 공제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 2015년도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료를 결정한 바, 2014년도 대비 평균 16.6% 인상⁹⁸⁾되어 피공제자(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46,221명 감소하였음도 직전회계연도 대비 14.8%, 7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98)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2015~2014)

(단위 : 원,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2015(A)	1,860	2,940	5,920	7,210	
2014(B)	1,770	2,420	4,980	5,970	
증감률(A-B/B)	5.1	21.5	18.9	20.8	16.6

※기타학교(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 학교급별 단가적용
 배움터지킴이 : 고등학교 단가적용

- 이자수입은 2억 6,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억 2,600만원)보다 △58.3%, △3억 6,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⁹⁹⁾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정기·보통예금, 저축보험 및 임차보증금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감소로 정기에금의 예치규모가 축소(일평균잔액 80억 3,700만원→72억 900만원)되었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표 7-4〉 기금 이자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금		정기에금(저축보험 포함)		기타예금	
	일평균잔액	총예금이자 ^{주1)} (A+B)	일평균잔액	정기에금이자(A)	일평균잔액	기타예금이자(B)
2015	10,100	179	7,209	123 (68.7)	2,891	56 (31.3)
2014	10,560	528	8,037	527 (99.8)	2,523	1 (0.2)

주 1. 기금운용명세서 이자수입 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이자수입 제외

- 전입금 및 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수입으로 각각 6,000만원, 1억 7,500만원인 바,
- 전입금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중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지원금 6,000만원이 기금으로 전입되어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되었으며

99)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2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제회는 법 제52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은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¹⁰⁰⁾에 의거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1억 7,500만원이 전입되어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되었음
- 기타수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¹⁰¹⁾ 및 정관¹⁰²⁾에 따른 수익사업인 소방안전점검 대행 사업의 이익금 1억 2,000만원과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200만원을 합한 1억 8,200만원임

1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일부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1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02)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3.03.27. 신설, 2015.03.20. 개정)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2015.03.20. 신설)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015회계연도 운용지출규모는 161억 5,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79억 9,300만원) 보다 △10.2%, △18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 고유목적사업비는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¹⁰³⁾ 지급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49억 3,000만원,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¹⁰⁴⁾ 8,800만원, 총 50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직전 회계연도(68억 9,200만원) 대비 △27.2%, △18억 7,400만원 감소하였음

- 고유목적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공제급여의 감소로 직전 회계연도(66억 2,400만원) 보다 △19억 1,100만원 감소한 47억 1,300만원이 지급된 바,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소액 청구건의 증가, 기금 고갈 위기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전국 시·도별 지급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제급여 지급 시 법률의 엄격

1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적용¹⁰⁵⁾ 등으로 전년도와 지급건수는 유사(△39건 감소)하나 지급액은 △10억 500만원 감소하였음

- 장해급여의 경우, 전년(15억 5,500만원) 대비 △10억 9,300만원 감소한 4억 6,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중증 장해 청구건이 감소되었고 기왕증이나 과실범위 등의 적용을 현실화¹⁰⁶⁾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7-5〉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5		2014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458	4,713	13,501	6,624	△43	△1,911
요양급여	13,434	3,776	13,473	4,781	△39	△1,005
장해급여	21	462	23	1,555	△2	△1,093
유족급여	2	435	2	248	0	187
위로금, 보전비용 등	1	40	3	40	△2	0

- 인력경비는 7억 1,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억 4,100만원)보다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억 8,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억 3,000만원)보다 5,700만원 증가한 것임
- 예치금은 2015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인 100억 2,900만원 전액임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2016.05.09.)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2016.05.09.)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0억 2,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억 3,000만원) 보다 △100만원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현황을 검토하면 2012회계연도 이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2015회계연도말 조성액을 2012회계연도(151억 400만원)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바, 이자수입의 제고, 법령 및 정관 범위 내 수익사업의 다각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7-6〉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2015	10,030	△1	6,123	6,124	10,029
2014	12,450	△2,420	5,543	7,963	10,030
2013	15,104	△2,654	4,858	7,512	12,450
2012	14,637	467	6,145	5,678	15,104
2011	15,101	△464	4,245	4,709	14,637

Ⅷ. 참고자료

1.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규모

○ 201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조 6,900억 9,2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4,318억원 4,100만원과
 간주처리분 1,061억 5,700만원을 더한
 총 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규모임

〈표 8-1〉 최종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당초예산(A)	7,690,092	7,439,129	7,368,893
추경증액(B)	431,841	233,600	433,747
간주처리(C)	106,157	32,191	243,046
최종예산 (D=A+B+C)	8,228,090	7,704,920	8,045,686

2. 결산 개관

가. 결산총괄

○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60억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1,800만원이며
 전년대비 4.7% 증가한 규모임

〈표 8-2〉 최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최종예산(A)	8,228,090	7,704,920	8,045,686
전년도이월액(B)	56,028	210,214	210,350
예산현액(C=A+B)	8,284,118	7,915,133	8,256,036
세입결산액(D)	8,468,772	7,925,316	8,171,203
세출결산액(E)	7,927,851	7,741,815	7,872,251
세계잉여금(F=D-E)	540,921	183,501	298,951
명시이월비	79,550	14,298	106,188
사고이월비	142,267	41,729	104,025
계 속 비	0	0	0
국고보조잔액	0	1,777	244
지방채상환	0	0	0
순세계잉여금(G)	319,104	125,696	88,494
순세계잉여금률(G/C)	3.9	1.6	1.1

나. 세입결산

〈표 8-3〉 자원별 세입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증 감 (A-C)	수납률 (C/A)
합 계	8,284,118	8,486,982	8,468,772	100.0	△184,654	102.2
이 전 수 입	7,128,402	7,315,385	7,315,285	86.4	△186,883	1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32,798	4,437,243	4,437,243	52.4	△4,445	100.1
국고보조금	77,391	77,391	77,391	0.9	0	100.0
법정이전수입	2,541,164	2,721,525	2,721,525	32.1	△180,361	107.1
비법정이전수입	66,036	66,576	66,576	0.8	△540	100.8
민간이전수입	6,976	8,612	8,512	0.15	△1,536	122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38	4,038	4,038	0.05	0	100.0
자 체 수 입	158,922	173,027	154,917	1.8	4,005	97.5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31,701	134,744	131,251	1.54	450	99.7
선택적 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239	2,030	2,030	0.02	209	90.7
사용료 및 수수료	5,013	5,026	4,998	0.06	15	99.7
자산임대수입	318	609	533	0	△215	167.6
자산매각대	8,284	2,136	2,125	0.02	6,159	25.7
이자수입	1,992	3,949	3,948	0.05	△1,956	198.2
보증금회수	15	145	142	0	△127	946.7
제재금수입	535	1,511	927	0.01	△392	173.3
기타수입	8,415	7,350	7,313	0.08	1,102	86.9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0.02	△1,242	403.7
지방교육채	815,070	815,069	815,069	9.6	1	100.0
이월금	181,724	183,051	183,051	2.2	△1,777	101.0

다. 세출결산

〈표 8-4〉 부문·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구성비	비율 (C/A)	비율 (D/A)			
합 계	8,284,118	7,927,851	95.7	100.0	221,817	2.7	134,450	1.6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38,919	7,701,778	95.8	97.1	218,930	2.7	118,211	1.5
인적자원운용	4,208,448	4,168,158	99.0	52.6	755	0.0	39,535	0.9
교수-학습활동지원	339,630	320,328	94.3	4.0	10,260	3.0	9,042	2.7
교육복지지원	954,261	917,989	96.2	11.6	3,428	0.4	32,844	3.4
보건/급식/체육활동	361,345	336,440	93.1	4.2	19,545	5.4	5,360	1.5
학교재정지원관리	1,662,574	1,655,996	99.6	20.9	0	0.0	6,578	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12,661	302,867	59.1	3.8	184,942	36.1	24,852	4.8
평생·직업교육	22,700	20,906	92.1	0.3	590	2.6	1,204	5.3
평생교육	19,480	18,287	93.9	0.2	26	0.1	1,167	6.0
직업교육	3,220	2,619	81.3	0.0	565	17.5	37	1.1
교육일반	222,499	205,167	92.2	2.6	2,296	1.0	15,035	6.8
교육행정일반	49,855	43,801	87.9	0.6	1,841	3.7	4,212	8.4
기관운영관리	41,946	39,358	93.8	0.5	425	1.0	2,163	5.2
지방채상환및리스토	125,586	122,008	97.2	1.5	30	0.0	3,548	2.8
예비비및기타	5,112	0	0.0	0.0	0	0.0	5,112	100.0

라. 사업별 집행내역

〈표 8-5〉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합 계		8,284,118	7,927,851	95.7	221,817	2.7	134,450	1.6
대변인	교육정책홍보	1,440	1,323	91.9	78	5.4	39	2.7
감사관	감사관리	257	214	83.4	0	0.0	43	16.7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77	350	92.9	0	0.0	27	7.2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90	776	78.4	0	0.0	214	21.6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23	145	65.1	71	31.7	7	3.1
총무과	교직원복지지원	5,387	5,361	99.5	0	0.0	26	0.5
총무과	교직원복지대여	42	42	100	0	0.0	0	0.0
총무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3,044	2,370	77.9	178	5.8	496	16.3
총무과	민원관리	667	598	89.7	52	7.8	17	2.5
총무과	행정서비스관리	1	1	60.4	0	0.0	0	0.0
총무과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182	615	52	550	46.5	17	1.4
정책안전 기획관	교육정책기획관리	1,334	1,107	83	6	0.4	221	16.6
정책안전 기획관	조직및성과관리	274	148	53.8	0	0.0	126	46.0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3,492,595	3,465,448	99.2	0	0.0	27,147	0.8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430,524	429,562	99.8	0	0.0	962	0.2
예산담당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992	44,663	99.3	0	0.0	329	0.7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190,170	181,675	95.5	0	0.0	8,495	4.5
예산담당관	계약제직원인건비	8,200	6,650	81.1	0	0.0	1,550	18.9
예산담당관	비정규직인사관리	45	13	28.5	0	0.0	32	71.1
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지원	605,207	603,069	99.6	0	0.0	2,138	0.4
예산담당관	예산관리	720	644	89.4	0	0.0	76	10.6
예산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250	4,131	97.2	40	0.9	79	1.9
예산담당관	본청운영	4,657	4,429	95.1	0	0.0	228	4.9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예산담당관	교육지원청운영	7,430	6,889	92.7	0	0.0	541	7.3
예산담당관	직속기관운영	23,987	22,990	95.8	0	0.0	997	4.2
예산담당관	예비비	5,112	0	0	0	0.0	5,112	100.0
행정관리 담당관	교직원단체관리	1,496	997	66.6	323	21.6	176	11.8
행정관리 담당	행정개선활동지원	34	32	95.7	0	0.0	2	5.9
행정관리 담당관	법무관리	1,355	1,276	94.2	0	0.0	79	5.8
행정관리 담당관	의정활동지원	71	69	98.6	0	0.0	2	2.8
참여협력 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81,471	74,635	91.6	3,341	4.1	3,495	4.3
참여협력 담당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41	24,391	99.4	0	0.0	150	0.6
참여협력 담당관	학기중급식비지원	35,968	33,456	93	0	0.0	2,512	7.0
참여협력 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5,346	5,247	98.1	0	0.0	99	1.9
참여협력 담당관	정보화지원	6,656	6,329	95.1	0	0.0	327	4.9
참여협력 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47,295	46,330	98	0	0.0	965	2.0
참여협력 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리	6	3	51.4	0	0.0	3	48.6
참여협력 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830	623	75	0	0.0	207	24.9
참여협력 담당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34	317	94.9	0	0.0	17	5.1
정보화담당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6,706	6,532	97.4	0	0.0	174	2.6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관리	6,718	5,478	81.5	0	0.0	1,240	18.5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운영	424	409	96.6	0	0.0	15	3.5
교육혁신과	영재교육원운영	3,297	3,279	99.5	0	0.0	18	0.5
교육혁신과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3,985	3,864	97	21	0.5	100	2.5
교육혁신과	ICT활용교육지원	205	204	99.4	0	0.0	1	0.5
교육혁신과	스마트교육지원	3,739	2,783	74.4	733	19.6	223	6.0
교육혁신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478	7,020	82.8	1,113	13.1	345	4.1
교육혁신과	교과서지원	61,382	37,210	60.6	88	0.1	24,084	39.2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	4,216	4,156	98.6	46	1.1	14	0.3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유아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4,960	4,954	99.9	0	0.0	6	0.1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33,171	32,721	98.6	0	0.0	450	1.4
유아교육과	기타교육비지원	1,119	861	77	0	0.0	258	23.1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593,479	593,444	100	0	0.0	35	0.0
초등교육과	교원연수지원	3,129	3,093	98.8	0	0.0	36	1.2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5,079	5,015	98.7	10	0.2	54	1.1
초등교육과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5,105	14,983	99.2	0	0.0	122	0.8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제운영	1,453	1,289	88.7	0	0.0	164	11.3
초등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	2,240	2,197	98.1	0	0.0	43	1.9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58,916	58,491	99.3	0	0.0	425	0.7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	3,544	3,292	92.9	0	0.0	252	7.1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23,524	23,073	98.1	286	1.2	165	0.7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7,079	6,659	94.1	175	2.5	245	3.5
중등교육과	교과자료개발보급	115	110	95.7	0	0.0	5	4.3
중등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421	413	98.2	0	0.0	8	1.9
중등교육과	특색교육과정운영	21,355	20,145	94.3	1,067	5.0	143	0.7
중등교육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49,194	48,859	99.3	0	0.0	335	0.7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380	4,270	79.4	935	17.4	175	3.3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	1,841	1,841	100	0	0.0	0	0.0
중등교육과	학력평가관리	10,319	9,467	91.7	0	0.0	852	8.3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7,073	6,639	93.9	0	0.0	434	6.1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6,507	6,487	99.7	0	0.0	20	0.3
민주시민 교육과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45	933	98.7	0	0.0	12	1.3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7,492	7,471	99.7	0	0.0	21	0.3
민주시민 교육과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3,849	3,629	94.3	0	0.0	220	5.7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2,278	2,021	88.7	70	3.1	187	8.2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8,292	7,675	92.6	0	0.0	617	7.4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지원	4,228	3,781	89.4	0	0.0	447	10.6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6,960	6,831	98.1	26	0.4	103	1.5
학생생활 교육과	특수교육운영	9,403	8,488	90.3	737	7.8	178	1.9
학생생활 교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209	4,064	96.6	0	0.0	145	3.4
학생생활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3,080	12,741	97.4	0	0.0	339	2.6
학생생활 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4,904	14,700	98.6	115	0.8	89	0.6
학생생활 교육과	대안교육운영지원	7,051	6,811	96.6	0	0.0	240	3.4
학생생활 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3,934	10,369	74.4	3,140	22.5	425	3.1
학생생활 교육과	검정고시관리	798	740	92.7	0	0.0	58	7.3
진로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운영지원	1,731	1,729	99.8	0	0.0	2	0.1
진로직업 교육과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9,261	9,081	98.1	64	0.0	116	1.3
진로직업 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2,240	2,240	100	0	0.0	0	0.0
진로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5,397	5,320	98.6	0	0.0	77	1.4
진로직업 교육과	진로진학교육	5,489	5,431	99	0	0.0	58	1.1
진로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38,089	37,593	98.7	0	0.0	496	1.3
진로직업 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3,220	2,619	81.3	564	17.5	37	1.1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6,738	24,895	93.1	416	1.6	1,427	5.3
체육건강과	체육육성종목지원	386	386	99.8	0	0.0	0	0.0
체육건강과	학생봉사활동지원	65	65	100	0	0.0	0	0.0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13,405	12,257	91.4	24	0.2	1,124	8.4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2,033	1,054	51.8	738	36.3	241	11.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427	365	85.6	0	0.0	62	14.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	281,130	278,456	99	0	0.0	2,674	1.0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55,633	35,674	64.1	18,754	33.7	1,205	2.2
체육건강과	체육대회지원	8,717	8,634	99.1	30	0.3	53	0.6
학교지원과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671	1,344	80.4	0	0.0	327	19.6

(단위 : 백만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학교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994,898	991,629	99.7	0	0.0	3,269	0.3
학교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2,469	61,298	98.1	0	0.0	1,171	1.9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238,872	123,747	51.8	103,785	43.4	11,340	4.7
학교지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384	382	99.5	0	0.0	2	0.5
학교지원과	사학기관관리	103	67	64.7	0	0.0	36	35.0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61	61	99.9	0	0.0	0	0.0
교육재정과	재무회계관리	395	377	95.3	0	0.0	18	4.6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3,225	1,933	60	890	27.6	402	12.5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17,852	15,238	85.4	0	0.0	2,614	14.6
교육재정과	일시차입금관리	87	4	4.2	0	0.0	83	95.4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시설증개축	35,375	15,541	43.9	19,412	54.9	422	1.2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38,413	163,579	68.6	61,745	25.9	13,089	5.5
교육시설 안전과	시설사업관리	16,465	15,499	94.1	47	0.3	919	5.6
교육시설 안전과	본청시설관리	554	387	69.7	109	19.6	58	10.5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504	1,342	89.2	0	0.0	162	10.8
교육시설 안전과	직속기관시설관리	3,813	3,322	87.1	316	8.3	175	4.6
교육시설 안전과	민간투자사업상환	107,648	106,767	99.2	30	0.0	851	0.8
교육연구 정보원	교과교육연구회지원	278	268	96.4	0	0.0	10	3.6
교육연구 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758	734	96.8	0	0.0	24	3.2
교육연구 정보원	학교평가관리	363	214	58.8	0	0.0	149	41.0
교육연구 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2,224	1,919	86.3	22	1.0	283	12.7
교육연구 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232	1,537	47.5	1,329	41.1	366	11.3
과학전시관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576	1,552	98.5	0	0.0	24	1.5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2,351	2,169	92.2	75	3.2	107	4.6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858	850	99.1	0	0.0	8	0.9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4,642	3,882	83.6	267	5.7	493	10.6

마. 이용내역

〈표 8-6〉 이용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이용액		예산부서	이용일자	사유
						증	감			
합 계					3,093,576	2,275	2,275			
1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	자치단체 이전	341,177	2,275		유아교육과	12.21.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충당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 인건비	교원 인건비	인건비	2,752,399		2,275	예산담당관		

바. 전용내역

〈표 8-7〉 전용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합 계				1,626,842	24,299	24,299			
1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수련 활동지원	민간이전	0	8	0	체육 건강과	02.09.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336	0	8			
2	학교운영비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복리후생비	0	2,178	0	예산 담당관	02.09.	맞춤형복지비 단체보험료 일괄 집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38,621	0	2,178			
3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인건비	22	1	0	강서 도서관	02.09.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지방 공무원 대체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보전금	63	3	0			
			민간이전	0	0	0			
			운영비	340	0	4			
4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건설비	3,095	10	0	학생생활 교육과	02.17.	중독예방상담센터 구축 리모델링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유형자산	83	0	10			
5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보전금	3	3	0	강서교육 지원청	03.04.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을 위해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443	0	3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6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13,017	120	0	북부교육 지원청	03.11.	2014년 12월에 장기계속공사로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집행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5,567	0	120			
7	학생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1,718	2	0	학생생활 교육과	03.23.	국립학교가 예산지원을 원하지 않아 공립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국립→공립)
			전출금등	89	0	2			
8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전출금등	0	37	0	참여협력 담당관	03.23.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대상학교 중 국립학교에 교부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601	0	37			
9	교원인사 관리	교원인사 관리	인건비	1	1	0	초등 교육과	04.06.	스승의 날 포상전수식 업무 지원을 교육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08	0	1			
10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관리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민간이전	242	85	0	총무과	04.08.	새로운 업무관리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가 6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 통합 유지보수로 변경되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유지보수 위탁(송금)을 위해 과목해소에 부합하도록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1,519	0	85			
11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1,077	2,672	0	교육시설 안전과	04.15.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3,040	0	2,672			
12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보전금	3	0	0	강동송과 교육지원 청	04.20.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444	0	0			
13	교육연구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80	15	0	교육연구 정보원	04.20.	학교로 교부하여야 할 예산의 과목 수정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164	0	15			
14	각종체육 대회활동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	355	228	0	체육 건강과	04.30.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 지원 진행을 입찰을 통한 외부위탁비로 집행계획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5,881	0	228			
15	재무관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0	10	0	참여협력 담당관	05.01.	동이리 구성원에게 개인 송금 정산 보다 회계처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0	0	10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16	재무관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운영비	0	30	0	참여협력 담당관	05.01.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계획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0	0	30			
17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전출금등	58	4	0	체육 건강과	05.07.	공립학교 지원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립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3,158	0	4			
18	예결산관리	예산관리	여비	0	18	0	예산 담당관	05.0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 정에 따라 회의참석여비가 신 설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40	0	18			
19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인건비	2	4	0	참여협력 담당관	05.11.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사업 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 였으나 2015.1.1.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배정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 을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92	344	0			
			여비	0	9	0			
			업무추진비	21	40	0			
			보전금	0	22	0			
			민간이전	2	70	0			
			자치단체 이전	0	133	0			
			학교회계 전출금	601	4,628	0			
			전출금등	0	0	5,250			
20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5	3	0	강남교육 지원청	05.15.	사업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과연구동아리 중점학교에 직접 교부 하고자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441	0	3			
21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지원	여비	2	9	0	행정관리 담당관	05.2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협조와 관련하여 국 외여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목간 예산 조정
			업무추진비	57	0	9			
22	재무관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건설비	0	40	0	북부교육 지원청	05.22.	무단점유 건물철거 대집행을 구청대행에서 직접 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자치단체 이전	40	0	40			
23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19,291	25	0	서부교육 지원청	05.22.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의 재난 위험시설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7,691	0	25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24	예결산관리	결산관리	운영비	50	8	0	교육재정과	06.0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일 76천원 상승함에 따라 수당 부족분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 간 예산 조정
	재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비	519	0	8			
25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기획관리	전출금등	0	0	0	정책안전 기획관	07.02.	서울교육중단연구의 패널 학생이 국립학교 재학 및 전입학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공립→국립)
			학교회계 전출금	556	0	0			
26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	민간이전	26	20	0	예산담당관	07.06.	계약제교원 법정부담금 (민간이전 목) 부족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1,286	0	20			
27	특성화고 교육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운영비	113	23	0	진로직업교육과	07.06.	노동인권교육 워크북 개발사업 주체 변경(학교→교육청)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7,769	0	23			
28	학생 선발배정	진학시험및 입학전형 관리	운영비	182	8	0	교육혁신과	07.09.	출제본부 합숙숙박비 부족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661	0	8			
29	학생생활 지도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간이전	181	150	0	민주시민교육과	07.09.	사업주관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14	0	90			
			학교회계 전출금	244	0	60			
30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운영비	0	55	0	참여협력담당관	07.21.	관련법 개정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수급대상자의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자치단체이전	0	0	55			
31	특성화고 교육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운영비	250	4	0	진로직업교육과	07.21.	사업주체 변경(한국고용정보원→교육청)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590	0	4			
32	교육과정 개발운영	특색교육 과정운영	유형자산	0	11	0	중등교육과	07.27.	오디세이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용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건설비	0	0	11			
33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학교회계 전출금	3,013	50	0	예산담당관	08.03.	당초 계획보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하는 학교 수요 증가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업무추진비	240	0	50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34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보전금	3	2	0	강서교육지원청	08.18.	사회복무요원 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여비	109	0	2			
3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0	30	0	참여협력담당관	08.18.	위탁운영기관(APCEIU)에서 위탁운영이 불가함을 통보해오에 따라 해당학교에 직접 교부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56	0	30			
36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650	900	0	예산 담당관	08.18.	공립학교 특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800	0	600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800	0	300			
37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운영비	514	4	0	양천도서관	08.21.	예측하지 못한 노후된 물품 및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유형자산	14	1	0			
			보전금	114	0	5			
38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기획관리	전출금등	0	10	0	교육혁신과	08.24.	학교혁신프로그램 공모 심사 결과 선정된 국립학교(1교)에 교부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0	0	10			
39	교육행정 정보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운영비	3,609	7	0	정보화 담당관	08.25.	교육부 주관 나이스 자문단 워크숍의 단체 항공권 및 여행자 보험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위탁운영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여비	7	0	7			
40	학생상담 활동지원	학생상담 활동지원	운영비	662	2	0	학생생활교육과	09.02.	교육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709	30	0			
			업무추진비	27	0	1			
			연구개발비	4	0	4			
			보전금	69	0	27			
41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보전금	10	2	0	북부교육지원청	09.30.	예상치 못한 사회복지요원 수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유형자산	14	0	2			
42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운영비	263	4	0	동작도서관	09.30.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보전금	30	0	4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43	교육연구및 교수학습지 원센터운영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운영비	1,700	35	0	교육연구 정보원	10.02.	가상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사 업이 폐지됨에 따라 학교홈페 이지 웹빌더 개발 사업 운영 비 및 실명인증 이용료로 변 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단위사 업간 예산 조정
	ICT활용 교육	사이버가정 학습운영및 지원	운영비	713	0	35			
44	학생 선발배정	대학수학 능력시험	학교회계 전출금	0	10	0	중등 교육과	10.16.	2016 수능시험장 중 방송시설 개선을 요구한 공립학교 지원 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전출금등	0	0	10			
45	학생 선발배정	진학시험및 입학전형 관리	전출금등	0	12	0	교육 혁신과	10.16.	고입 자기주도학습 시도분담 금을 송금(경기도교육청)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182	0	1			
			자치단체 이전	0	0	11			
46	교육정책 홍보	교육정책 홍보	인건비	36	1	0	대변인	10.21.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부족한 인건비 및 유형자산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7	0	0			
			유형자산	10	19	0			
			운영비	1,277	0	20			
47	교원 역량강화	교원 연수운영	유형자산	85	143	0	교육 연수원	10.29.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방이전에 따라 강의실 책상 및 노후 기 자재 교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096	0	143			
48	비정규직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인건비	1,426	49	0	예산 담당관	10.29.	계약제직원처우개선비(장기근 무가산금) 소요액 증가로 부 족분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복리후생비	456	0	49			
49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과학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운영비	8	45	0	교육 혁신과	10.29.	과학실험실 기타 폐유기용제, 폐시약 및 액침표본 처리 위 탁용역비 확보를 위한 단위사 업간 예산 조정
	교육과정 개발운영	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교회계 전출금	0	0	45			
50	교원 역량강화	교원 연수운영	유형자산	85	187	0	교육 연수원	10.29.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방이전에 따라 강의실 기자재 확충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096	0	187			
51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유형자산	17	5	0	학생 교육원	10.30.	노후화된 급식실 비품(국술) 구입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812	0	5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52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민간이전	88	3	0	중등교육과	11.04	원어민보조강사의 퇴직금 확보와 국립학교에 인건비를 교부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전출금등	109	34	0			
			학교회계 전출금	48,457	0	37			
53	감사관리	감사관리	운영비	0	10	0	행정관리 담당관	11.2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인쇄비, 속기로, 수감물품 구입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간 예산 조정
	법무관리	법무관리	운영비	477	0	10			
54	교육행정 기관시설	직속기관 시설관리	운영비	300	22	0	예산 담당관	11.18.	평생교육기관 및 도서관환경 개선 중 시설보수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유형자산	300	0	22			
55	특성화고 교육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7,769	15	0	진로직업 교육과	11.29.	동계 방학 중 추진되는 가업승계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변경(교육청→학교)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113	0	15			
56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유형자산	1	15	0	고척도서관	11.25.	고척도서관 고층 민원 사항인 열람실 의자 교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353	0	15			
57	유아교육 진흥	사립유치원 지원	복리후생비	31,860	200	0	유아교육과	12.04.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1,304	0	200			
58	기본운영비	직속기관 운영	보전금	36	1	0	도봉도서관	12.07.	예상하지 못하게 증가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288	0	1			
59	기본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	유형자산	6	21	0	강남교육지원청	12.07.	청사 내 공사로 인한 구조변경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비품구입을 위한 단위사업간 예산 조정
	교육행정 기관시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비	40	0	21			
60	학생생활 지도	학생생활 지도지원	운영비	214	2	0	민주시민교육과	12.07.	중앙교육연수원에 예산 전출이 불가능하여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전출금등	2	0	2			
61	급식관리	학교급식 관리	운영비	237	2	0	체육건강과	12.07.	교육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용역사업의 낙찰 차액을 우편 배송비로 충당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연구개발비	72	0	2			
62	기본운영비	본청운영	유형자산	80	11	0	총무과	12.09.	민원봉사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민용인용 가구 등) 구입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3,201	0	11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63	보건관리	학교보건관리	학교회계 전출금	0	20	0	학생생활 교육과	12.09.	생명존중(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19	0	19			
			업무추진비	1	0	1			
64	정규직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334,699	2,630	0	예산 담당관	12.15.	지방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 산 조정
			직무수행 경비	11,575	166	0			
			민간이전	75,466	0	2,796			
65	정규직 인건비	교육전문직 원인건비	인건비	35,667	945	0	예산 담당관	12.15.	교육전문직원 보수 부족분 충 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민간이전	7,876	0	945			
66	비정규직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운영비	34	2	0	예산 담당관	12.15.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행사용품 구입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전출금등	2	0	2			
67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	자치단체 이전	341,177	6,334	0	유아 교육과	12.21.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충당 을 위한 목간(누리과정 유아 학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249,752	0	6,334			
68	정규직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4,593	2	0	총무과	12.21.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변동 복지점수 증가분 충당을 위한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	31,021	0	2			
69	정규직 인건비	교육전문직 원인건비	복리후생비	301	35	0	총무과	12.21.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 변 동복지점수 증가분 충당을 위 한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	31,021	0	35			
70	법무관리	법무관리	보전금	80	78	0	행정관리 담당관	12.23.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패소 된 소송비용 결정금, 소송 포 상금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운영비	477	0	78			
71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여비	12	15	0	총무과	12.24.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광역시 로 이전('15.10월)함에 따라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3주) 참석자에게 지급할 교육훈련여비가 부족한 기관 에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세 부사업간 예산 조정
			학교회계 전출금	0	6	0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운영비	879	0	21			

(단위 : 백만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부서	전용일자	전용 사유
					증	감			
72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650	1,100	0	예산 담당관	12.2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비율 조 정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800	0	650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800	0	450			
73	외국어교육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113	10	0	학생 교육원	12.24	원어민강사 퇴직적립금 부족 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 정
			운영비	293	0	10			
74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학교회계 전출금	1,650	41	0	예산 담당관	12.2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 출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목 간 예산 조정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800	0	39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800	0	2			

사. 명시이월 현황

〈표 8-8〉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합계		134,228	79,550		
1	맞춤형복지관리 단체보험 조달수수료	70	70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계약기간(2015.1.1.~2015.12.31.) 완료 후 조달수수료가 고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총무과
2	이동식학생안전 체험시설	550	550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안전체험교육 시설 표준모형 개발 중으로 개발 완료 후 2016년 실시설계 및 제작 가능	정책안전 기획관
3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보전금)	3,769	893	2015. 7.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 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참여협력 담당관
4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민간이전)	1,700	584	2015. 7.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 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참여협력 담당관
5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전출금 등)	37	18	2015. 7.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 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참여협력 담당관
6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14,742	1,845	2015. 7.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 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참여협력 담당관
7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	1,170	1,170	학교 의견 반영 및 설계과정 참여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사업 집행 불가	중부 교육지원청
8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비	290	250	2016년 2차 사업(인성·생활 등) 및 연계· 고도화(시범운영중인 시스템 결과물 반영)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9	교수학습자료개발 (운영비)	249	194	중학교 2~3학년 자료 개발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	교육 혁신과
10	교수학습자료개발 (업무추진비)	5	3	중학교 2~3학년 자료 개발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1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방법 연수 (운영비)	3	2	2015년에 개발된 과목 간 교수학습방법의 검증 및 고도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2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방법 연수 (업무추진비)	4	2	2015년에 개발된 과목 간 교수학습방법의 검증 및 고도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3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방법 연수 (전출금 등)	12	8	2015년에 개발된 과목 간 교수학습방법의 검증 및 고도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4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방법 연수 (학교회계전출금)	428	182	2015년에 개발된 과목 간 교수학습방법의 검증 및 고도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6	효과성 및 역기능 연구	50	34	사업기간이 2015.10월~2016.6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6	스마트콘서트 개최	20	10	서울미래학교 개교(2016년 3월)이후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7	홍보자료 제작	33	33	외부 리모델링, 교실 환경 및 기자재 구매 등이 완성된 2016년 3월 이후 홍보자료 제작이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8	약기지원 시범사업 (운영비)	1,110	1,110	사업기간이 2015.11월~2016.12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19	약기지원 시범사업 (업무추진비)	3	3	사업기간이 2015.11월~2016.12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20	교과서완결학습 체제마련 (운영비)	235	235	사업기간이 2015.11월~2017.9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21	교과서완결학습 체제마련 (업무추진비)	10	10	사업기간이 2015.11월~2017.9월로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혁신과
22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33	33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초등 교육과
23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33	33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중등 교육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4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민간이전)	10	10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초등 교육과
25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운영비)	1	1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초등 교육과
26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업무추진비)	1	1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초등 교육과
27	교원존중풍토 조성 지원 (업무추진비)	1	1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중등 교육과
28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비)	286	137	2016년도 특별교부금과 합산하여 집행 예정(교육부 공문)	교육 연수원
29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비)	631	631	201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선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 집행 예정	중등 교육과
30	영어교사 심화연수 (민간이전)	10	10	201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선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송금 예정	중등 교육과
31	교육과정운영내 실화 (민간이전)	811	811	2015 개정 교육과정 홍보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2016년 10월까지 사업 추진	중등 교육과
32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운영비)	10	10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2016년 2월 사업 추진	중등 교육과
33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업무추진비)	1	1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2016년 2월 사업 추진	중등 교육과
34	교권보호방안 추진 (운영비)	59	59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중등 교육과
35	교권보호방안 추진 (운영비)	1	1	2015.11.12.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중등 교육과
36	학생인권 교육센터 운영	22	22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종합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나 인권실태조사가 11월말에 완료(예정)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	민주시민 교육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7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종합 추진	83	48	2015.09.24. 특교 교부되어 일부 프로그램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학생생활 교육과
38	친일청산교육활동 지원	175	175	연초에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이 늦어져 연내 학교회계 전출금의 정상적인 교부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민주시민 교육과
39	Wee스쿨 설치 운영	3,000	3,000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1:1 대응투자 (본예산) 미확보로 연도 내 추진 불가능	학생생활 교육과
40	특화Wee센터 건립 (건설비)	90	90	장소 섭외 등의 협의기간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학생생활 교육과
41	특화Wee센터 건립 (유형자산)	50	50	장소 섭외 등의 협의기간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학생생활 교육과
42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지원	135	115	2016년 12월까지 운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학생생활 교육과
43	인정도서 개발지원	63	63	2015.11.1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진로직업 교육과
44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안전요원 연수 (운영비)	260	97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원 대상 안전요원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나,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중 실시되는 관계로 2016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수는 2015년 12월까지 지출이 불가	체육 건강과
4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안전요원 연수 (업무추진비)	5	2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원 대상 안전요원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나,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중 실시되는 관계로 2016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수는 2015년 12월까지 지출이 불가	체육 건강과
46	학교체육예술 교육활성화	30	30	2015.10.29. 특교 교부되어 협의체 운영 기간이 2016.1월~12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이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선정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하는데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체육 건강과
47	동일중 급식실 신축	1,279	1,279	건설비 부족 및 급식실 신축장소 변경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	남부 교육지원청
48	동일여고 급식실 기구 구입	203	203	급식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동일여고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가 방학 중(12월)에 진행됨에 따라 관련 기구 구입비 명시이월	남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49	경신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	1,941	1,941	입찰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11월 설계 완료 예정이며, 문화재승인, 설계완료 후 시설관리 사업소에 설계검토 의뢰 완료, 입찰준비 및 공고, 공사업체 계약까지의 소요시간이 한 달 이상 예상되어 연도 내 공사 집행이 어려움	중부 교육지원청
50	잠원초 급식실 증축	250	250	급식실 증축공사를 위하여 상반기에 특교 를 지원 받았으나 건축비 부족으로 추가예 산 확보 필요. 학기 중 급식중단 방지 및 2016년 여름방학공사 추진	강남 교육지원청
51	중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315	1,315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공사 특별교부 금(지역교육현안수요)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강남 교육지원청
52	우암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765	765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공사 특별교부 금(지역교육현안수요)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강남 교육지원청
53	양천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개축	801	801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공사 특별교부 금(지역교육현안수요)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54	강월초 급식실 개보수	105	105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공사 특별교부 금(지역교육현안수요)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55	태릉고 급식실 증축	247	247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공사 특별교부 금(지역교육현안수요)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동부 교육지원청
56	가재울초 부지 매입	23,216	8,643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 (20%) 집행 불가능	교육 재정과
57	송신초 부지 매입	6,902	1,798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 (20%) 집행 불가능	교육 재정과
58	금호고 부지 매입	26,525	26,525	조합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및 계획 하향고 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 도 내 계약체결 불가능	교육 재정과
59	녹원초 신축	1,500	1,481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사업 사업 계획 사전검토(50일) 및 디자인공모학교 설계용역(8개월 소요)에 따른 연도 내 추진 어려움	서부 교육지원청
60	가재울초 신축	16,884	50	하수도 원인자분담금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총공사 준공예정일이 2016년 2월)	서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61	공유재산취득 (재동초 사유지 매입비)	150	150	토지소유자와 민사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청구, 민사조정신청 등) 진행 예정으로 판결 후 추진 예정	중부 교육지원청
62	기타토지비용 (재동초 사유지 장기사용료)	740	740	토지소유자와 민사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청구, 민사조정신청 등) 진행 예정으로 판결 후 추진 예정	중부교육 지원청
63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구축	47	47	교육부 주관사업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업체 선정 지연 (2016년 선정 예정)	교육시설 안전과
64	창덕여중 서울미래학교 시설비	500	445	학교(실수요자)의 의견반영 및 설계과정 참여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사업 진행 불가능	중부 교육지원청
65	창덕여중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	92	92	서울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부 교육지원청
66	환일고 농구장 하부 구조물 보강 및 축대보수	99	99	해당사업이 만리제2구역 재개발 조합과 연관이 있어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후 건축승인 지연이 예상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중부 교육지원청
67	경신중 경사지 보강	150	150	경사지 무단 점유자와 소송 진행 중(소송 완료 후 추진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중부 교육지원청
68	덕성여중 담장개선	70	70	지역주민 민원 협의기간 지연 및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중부 교육지원청
69	우신중 운동장 개선보수사업	150	150	시설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현재 추가재원 확보 중)	남부 교육지원청
70	명신초 다목적강 당 및 특별교실 증축 공사	1,436	1,393	사업변경으로 인한 재설계용역기간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중부 교육지원청
71	수송초 복합화	3,306	3,306	지자체 전입금으로 추진 중인 1차 공사 미완료 및 2차 공사 시기 미도래로 이월	성북 교육지원청
72	수송초 복합화	1,775	1,407	지자체 전입금으로 추진 중인 1차 공사 미완료 및 2차 공사 시기 미도래로 이월	성북 교육지원청
73	청량고 식당동 계단실 설치	166	166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부 교육지원청
74	청량초 후관동 냉난방 개선	170	170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부 교육지원청
75	전곡초 교사동 냉난방 개선	388	388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76	원목고 체육관 환경개선	200	200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부 교육지원청
77	연세대학교재활 학교 전공과 교실 및 직업훈련실 증축	518	518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78	은평메디텍고 전기시설 개선 LED교체	180	180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79	정원여중 외부 창호 및 발코니 출입문 교체	381	381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0	서울디자인고 실습실 및 특별 교실 증축	712	712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1	연광초 본관 외벽 개선	139	139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2	성사중 특별교실 개선	200	200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3	동교초 복도 바닥개선	144	144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4	염리초 특별교실 개선	367	367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5	대조초 교실 출입문 개선	146	146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6	갈현초 나동 외부창호 개선	246	246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7	연천중 본관 LED교체	428	428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8	서강초 화장실 개선	511	511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89	충암중 본관, 별 관 방수	168	168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90	충암고 본관 냉난방기 개선	352	352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91	충암고 본관, 별관 방수	159	159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92	송실고 본관 외부도장	43	43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부 교육지원청
93	계상초 외벽개선	439	439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북부 교육지원청
94	수암초 냉난방개선	512	512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북부 교육지원청
95	도봉고 냉난방개선	612	612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북부 교육지원청
96	광문고 체육관 개선	289	289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97	정곡초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	935	935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98	양동초 운동장 개선	113	113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99	월정초 창호 개선	302	302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100	등촌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49	249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서 교육지원청
101	서울고 특별교실 증축	1,187	1,159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남 교육지원청
102	숙명여고 LED교체	473	473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강남 교육지원청
103	신남성초 도서실 및 회의실 조성	182	182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04	삼성초 LED 교체	255	255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05	난우초 중연창 및 출입문 개선	296	296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06	원당초 시청각실 설치	134	134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07	봉천초 바닥 개선	230	230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08	용문중 진입로 개선	235	235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성북 교육지원청
109	동구여중 본관 외부창호 개선 (단창)	402	402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성북 교육지원청
110	동구여중 본관 외벽개선(타일)	360	360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성북 교육지원청
111	동구여중 후문 통학로 포장 개선	100	100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성북 교육지원청
112	영훈고 본관 수배전시설(변압기포함)이전 설치공사	250	250	감사지적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로 시설비 지원을 유보하여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성북 교육지원청
113	서대문도서관 리모델링	316	316	2015.11.06. 특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능	서대문 도서관

아. 사고이월 현황

〈표 8-9〉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합계		269,261	142,267		
1	서울시교육청 홍보영상물 제작	80	52	교육활동, 기상악화로 인한 촬영 지연으로 시사회 보완사항 반영을 위한 추가 제작기간 소요	대변인
2	대변인실 공보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30	26	무응찰로 인해 입찰기간이 지연되어 수의 계약 시 시스템 구축 기간 추가 소요	대변인
3	민원관리	576	52	서울교육콜센터 민간위탁 장기계속용역계약 기간이 2014.03.01.~2016.01.31(1년 11월간)로 2016년 1월분 위탁용역비 사고이월	총무과
4	중요기록물 전자화 DB 구축	928	178	중요기록물 전자화사업은 2015.6.4~12.31.(210일) 계약된 사업으로 현재 1차 및 2차 기성금이 지급된 상황이며, 12. 31. 사업 완료 후 검수를 통해 잔금 지급	총무과
5	서울일반노조 (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 임차료	323	323	노조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처리시간 필요	총무과
6	홍대부중 연결통로 설치	40	40	차치구(성북구청) 지원예산과 같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	예산 담당관
7	교원업무경감	245	116	전국 단위 학교 현장 진단 및 컨설팅 규모 확대에 따른 연구 기간 연장	교육 혁신과
8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105	21	교육지원청별 처리 일정 조율 및 수거 후 처리와 정산에 따른 추가시간 필요	교육 혁신과
9	서울미래학교 설립	88	15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2015.10.16~2016.6.30)	교육 혁신과
10	지역화교과서인쇄	58,928	88	2016학년도용 초3 사회과 보완도서로서 제작 시 내용 수정 등 점검사항이 수시 발생 하여 12월까지 수정보완 및 인쇄 곤란. 1월에 인쇄 예정	교육 혁신과
11	학습부진요인검사	75	10	선행작업(문항개발) 완료 이후 작업 진행에 따른 기간 연장	초등 교육과
12	영어교사 심화연수	443	157	연수 미종료에 따라 연수종료 후 집행예정	중등 교육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3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	60	26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항 추가 등 개발기간 연장	평생교육과
14	성일중 특별교실 이전 및 센터 리모델링공사	1,018	737	지역주민 반대 집회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학생생활교육과
15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급증설 리모델링공사	600	564	추경예산 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공사완료기간 미도래	진로직업교육과
16	감염병관리 메뉴얼개발 위탁사업	46	24	업체 개발시간 부족에 따른 연장계약	체육건강과
17	고은초 운동장 개선공사	100	85	동절기 공사 중지	체육건강과
18	수도공고 운동장 개보수	313	313	인조잔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체육건강과
19	방일초 석면해체제거 (특별교부금)	447	350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건강과
20	방일초 석면해체제거 (서울시전입금)	387	387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건강과
21	성서중 급식실 개보수 및 학생식당 설치	550	273	내진 보강공사와 동일 건으로 계약되어 공기 추가 필요 및 방학 중 공사 예정	체육건강과
22	노곡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839	680	학교보건진흥원 컨설팅진행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 요청	체육건강과
23	남사초 급식실 증축	1,016	965	급식중단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착공일정 조정하여 절대공기 부족	체육건강과
24	고명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107	274	겨울방학 중 기존급식실 조리기구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	체육건강과
25	구로고 급식실 신증축 및 학생식당 보수	1,581	556	학생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체육건강과
26	전일중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193	18	준공기일 미도래	체육건강과
2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109	109	도시계획결정(변경) 입안 지연	학교지원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8	가칭)왕십리고 부지 매입	27,200	23,787	지장물과 폐기물 처리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지급예정	교육 재정과
29	수도여고 본관후면 화장실개선	232	220	수능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측의 겨울방학 중 공사요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0	당곡고 본관전관 화장실개선	174	166	수능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측의 겨울방학 중 공사요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1	남사초 별관동 화장실개선	252	241	추경예산 배정된 급식실과 통합 발주 및 급식 중단일정을 고려하여 12.4. 착공되어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2	구암중 화장실개선	280	143	공사로 인한 화장실사용 불편으로 학교 측의 전관동 화장실은 여름방학 중 개선하고 후관동은 겨울방학 중 개선 요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3	구로고 본관 화장실 개선	232	214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4	언남고 교사동 화장실 개선	88	87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육시설 안전과
35	서울여고 별관 화장실개선	232	218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교육시설 안전과
36	원목초 특별교실 증축	935	892	준공시기 미도래	동부 교육지원청
37	중화고외1교(태릉고) 내진보강 및 외벽보수공사	879	814	학교요청(학사일정)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38	청량고외1교(청량중) 보수보강공사	240	218	1차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준공미도래)	동부 교육지원청
39	장평중외1교(중화고) 교사보수보강 및 화장실개선	154	104	1차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준공미도래)	동부 교육지원청
40	태릉중 체육시설보수보강	613	59	납품시기 미도래	동부 교육지원청
41	휘경공고 교사동 LED교체	500	481	학사일정으로 겨울방학 중 진행 (학교장 요청)	동부 교육지원청
42	홍릉초외 1교(목동초)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52	144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43	면목초외 1교(중랑초)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76	76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4	중랑중 본후관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23	112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5	중목초 교사동 화장실개선	100	82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6	성일중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60	146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7	군자초외 1교(용두초)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93	161	1차 추경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8	동원중 후관동 화장실개선 공사	100	84	서울시 지원사업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부 교육지원청
49	경희초 재난위험시설 해소	440	440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 예정	동부 교육지원청
50	가재울초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16,703	6,663	2016년 3월 개교일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서부 교육지원청
51	한성과학고 기숙사 증축공사	3,384	2,726	2016년 3월 사용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서부 교육지원청
52	동교초 신관, 정보화동 옥상방수	144	15	겨울방학 중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기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53	성서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403	372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54	성서중 내진보강	477	175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기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55	성서중 급식실 리모델링	50	28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기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56	아현초 방음벽 설치공사	410	383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기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57	연가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84	78	준공금 미청구	서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58	연희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3	28	준공금 미청구	서부 교육지원청
59	홍연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3	12	준공금 미청구	서부 교육지원청
60	중암중 교실창호개선	82	74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1	마포초 화장실개선	218	201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2	공덕초 화장실개선	100	85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3	녹번초 화장실개선	100	80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4	대조초 화장실개선	100	85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5	북성초 화장실개선	100	85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6	연가초 화장실개선	100	92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7	서울여고 본관 화장실개선	100	61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학에 맞춰 착공함	서부 교육지원청
68	금화초 지붕개선공사	135	128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절대공사 기간 부족	서부 교육지원청
69	신도중 장애인편의시설	187	157	추경예산 배정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학교 장의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요구)	서부 교육지원청
70	북가좌초 균열보수공사	36	35	준공금 미청구	서부 교육지원청
71	미동초 교실출입문개선	154	142	추경예산배정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학교장의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요구)	서부 교육지원청
72	구산초 화장실개선	100	78	추경예산 배정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서부 교육지원청
73	망원초 화장실개선	105	98	추경예산 배정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서부 교육지원청
74	중암중 화장실개선	100	87	추경예산 배정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서부 교육지원청
75	성산중 교육환경개선	659	276	수업지장 우려 있어 학교장 요청으로 겨울 방학 중 공사시행	서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76	상암초 급식실 지하 오수조 환경외 2종 개선	69	61	최소 공사기간은 40일간(시운전 및 시험가동 제외)으로 공사기간 미확보	서부 교육지원청
77	아현초 화물용 승강기 구매 및 설치	66	58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급식기간 (방학)에 설치	서부 교육지원청
78	선일이비즈니스고 조명기구 및 텍스 교체	139	135	학기 중에는 학생 급식으로 공사가 불가능 하므로 겨울방학에 공사	서부 교육지원청
79	광성고 교사동 외벽개선	109	109	중앙조달 계약체결 후 절대공기가 2015.12.31이후가 됨	서부 교육지원청
80	광성중 외벽개선공사	119	119	중앙조달 계약체결 후 절대공기가 2015.12.31이후가 됨	서부 교육지원청
81	선일여고 냉난방개선	207	200	학습공간 부족으로 인해 3학년이 없는 겨울방학 공사 시행	서부 교육지원청
82	선정관광고 간호실습실 증축	150	149	학생수업 및 안전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공사실시	서부 교육지원청
83	세명컴퓨터고 기타사업(LED교체)	20	20	입찰진행 후 1순위 업체 낙찰포기서 제출 및 재입찰로 기한 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84	세명컴퓨터고 기타사업 (기능영재반특별 교실개선)	120	120	건축사 설계포기로 재설계에 따른 기한 연장	서부 교육지원청
85	신진자동차고 다목적실 조성	40	40	준공검사 중이며, 완료후 송금 및 준공확인 요청 예정임.	서부 교육지원청
86	초등교사 진보 프로그램 개발	79	33	2016.3.1.자 초등교사 진보프로그램 개발이 2016.2.29까지 이어짐	남부 교육지원청
87	구일초 엘리베이터 설치	180	171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88	신구로초 급식실 설계비	60	52	설계자와의 협의지연	남부 교육지원청
89	시흥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648	1,436	추경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90	동일여고 덤웨어외 1종	440	440	학생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중공사 추진	남부 교육지원청
91	한울중(이전)신축	14,677	9,628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2016년 3월 이전 개교)	남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92	가칭)구심초 신설	3,356	2,781	장기계속사업(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93	동일여고 전기시설개선(본관5 층LED교체)	140	125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4	서서울생과고 창호개선 (교사2동 교실 출입 문개선)	28	19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5	동일여고 화장실개선 (꾸미고 꿈꾸는 학 교화장실)	450	406	당초 여름방학 중 실시예정이었으나, 서울 시지정 디자인디렉터의 설계서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등으로 일정 변경되어 겨울 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6	서서울생과고 전기시설개선(운동 장전기시설보수,위 험전주철거)	40	20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7	동일여고 기타사업(수덕관트리 스내력보강)	169	168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8	문일고 기타사업(강당동방송 장비교체)	50	50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남부 교육지원청
99	문교초 치장벽돌균열보수 및 인방 보강	336	301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0	영동초 (구)급식실 리모델링	340	325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1	당산서중 교사동 현관문 교체 공사	30	29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2	여의도중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	230	124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3	당서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49	43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4	구로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00	64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05	오류남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63	56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6	구로남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0	11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7	영중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0	17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8	영서중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55	142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09	영원중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00	53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10	금천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00	86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11	오류남초 본관동 조명교체(석 면교체포함)	114	73	추경예산 배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12	정진학교 외벽보수	50	35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절대공사 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13	영중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	126	29	학교협의에 따른 설계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	남부 교육지원청
114	고척중 강당겸 체육관 증축	900	684	공사 중인 급식실 상부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교협의를 및 검토기간으로 공사기간 부족(체육관 장기계속사업)	남부 교육지원청
115	서울아이티고 전기시설개선	210	206	전기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예방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 중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절대공기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16	선덕중 교실 환경개선	40	40	2015.12.30. 겨울방학 시작이며 방학기간 중 방과후학교 수업이 있어 1월 12일 착공, 학교 정규수업중 공사진행 불가	북부 교육지원청
117	용화여고 방수공사	150	149	해당건물이 고3학년 전용건물로 수능시험및 기말고사 이후 착공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 등	북부 교육지원청
118	재현중 스탠드 개선공사	314	300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북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19	청원여고 냉난방(GHP)개선	185	141	공사하는 교실전체가 3학년 교실로 공사로 인한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를 실시하여 절대공기 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20	한국삼육학교 옥상방수공사	50	50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 및 추위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북부 교육지원청
121	혜성여고 정진관 LED 조명 설치	40	40	배정예산 부족으로 인한 계획 물량 조정 및 절대공기 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22	도봉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270	773	학교장의 급식실 내부실 위치(도면) 변경 요청 및 여름방학 시작일에 착공 요청	북부 교육지원청
123	수락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	500	475	절대공기 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24	한천중 강당겸 체육관 증축	240	175	절대공기 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25	방학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	600	559	절대공기 부족	북부 교육지원청
126	태랑초 화장실개선	30	25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27	계상초 신관냉난방개선	60	57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28	용원초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462	440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29	월계중 교사동 조명교체 (석면텍스포함)	165	162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30	자운고 냉난방개선	667	618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31	방학중 화장실개선	362	344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32	신학초 화장실개선	100	91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33	월천초 화장실개선	100	94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134	신상중 화장실개선	20	12	학교장의 수업지장 최소화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북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35	한천중 주차장 뒀스설치	37	32	한천중 부지 내 무단 점유 중인 건물 대집행(철거)이 연도 말(2015.12.14.)에 실시됨에 따라 연도 내 부지정비공사 준공 불가능	북부 교육지원청
136	용강중 교사동 균열보수보강 공사	118	26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37	경기상고 외1교 (흥인초) 천정텍스 교체공사	406	377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38	청파초 외 3교 (용산초, 세검정초, 선린인터넷고) 교사동 균열 보수보강공사	202	167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39	창신초 외 3교 (선린중, 경기상고, 명신초)교사동 균열 보수보강공사	205	104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0	한남초 외 3교 (장원중, 용산공고, 용산고)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84	150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1	신용산초 외 3교 (서빙고초, 광희초, 이태원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70	139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2	청운중 외 3교 (금호여중, 장충초, 성동글경고)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216	199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3	중경고 교사동 균열보수공사	275	146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4	혜화초 외3 교 (청구초, 남산초, 보 광초) 교사동 균열 보수보강공사	203	196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5	서울미래학교 (창덕여중) 외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500	54	사용자(학교장)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	중부 교육지원청
146	금호여중 화장실 개선공사	100	54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47	금양초 화장실 개선공사	100	76	추경배정으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8	경기여상 체육관 지붕 및 벽면 교체 공사	630	607	연계시공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49	경기여상 별관동 외벽 공사	290	277	연계시공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0	배문고 교사동 보수보강	900	869	예산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과 재난 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1	배문고 재난위험시설 구조보강	150	149	예산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과 재난 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2	대신고 동아리활동실 설치공사	45	45	연도말 예산 배정 및 학사일정 상 겨울방학 중 공사가 불가피하여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3	상명사대부여고 절개지 보강	150	150	추경배정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능(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4	오산고 도서실조성공사	301	301	추경배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5	장충고 냉난방기교체	75	71	추경배정으로 학기 중 공사가 불가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6	환일고 교사동 구조균열 보수 보강	140	140	추경배정으로 학기 중 공사가 불가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7	환일중 복도벽면타일공사	34	34	추경배정으로 학사일정상 방학기간 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중부 교육지원청
158	덕수중 램프및개선공사등	129	108	1회 추경예산, 학기 중에는 학생 급식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겨울방학에 공사 진행	중부 교육지원청
159	장충초 식당방수공사	150	136	1회 추경예산, 학기 중에는 학생 급식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겨울방학에 공사 진행	중부 교육지원청
160	충무초 식당환경개선공사	34	32	1회 추경예산, 학기 중에는 학생 급식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겨울방학에 공사 진행	중부 교육지원청
161	대경상고 급식실 배기후드닥트공사	56	49	1회 추경예산, 학기 중에는 학생 급식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겨울방학에 공사 진행	중부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62	거여초 노후교실개축	12,100	2,235	2단계 공사 완료 기간 미도래 (2016.04.27.)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3	송파공고 옥상방수	130	115	설계기간 소요 및 공사완성도 위해 동절기 습식 공사 중지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4	송파중 파라펫 방수	47	47	시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 중(2015.11.2.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병행 추진 중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5	둔촌초 방수공사 및 내부수리	30	30	설계기간 장기소요 및 학습권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성일초와 병행)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6	성일초 내부도장	35	33	설계기간 장기소요 및 학습권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둔촌초와 병행)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7	오주중 외부도장	50	50	설계기간 장기소요 및 학습권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명일여고와 병행)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8	송파중 장애인 편의시설	180	165	시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2015.11.2.) 중으로 파라펫 방수 공사와 병행 추진 중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69	강일고 체육연습장시설	150	89	학교 교부금(금150,000,00원) 도서관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0	둔촌고 방송장비교체	110	100	2015.8.1. 추경변경(당초 교사동 및 체육관 보일러 교체)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1	천동초 서관 화장실개선	362	232	2015.5.8. 우선확정, 설계기간 소요로 학기 중 공사추진(준공 처리 중)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2	마천초 화장실개선	100	92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3	석촌초 화장실개선	100	84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4	신가초 화장실개선	20	15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5	평화초 화장실개선	20	18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6	명일중 화장실개선	100	80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7	가원중 화장실개선	107	96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8	길동초 외부창호개선	393	306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79	신암중 (구)급식실 리모델링	150	149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80	마천초 외부창호개선	369	347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1	신가초 외부창호개선	787	699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2	오륜초 외부창호개선	676	635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3	한산초 전기통신시설개선	196	185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4	명일여고 냉난방개선	147	111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5	풍성중 옥상방수	121	107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6	거원초 출입문 및 증연창 개선	224	210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7	송파공고 교실출입문 개선	140	140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8	천일중 증연창 개선	182	180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89	토성초 화장실 개선	324	322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0	가락고 냉난방개선	206	162	설계기간 장기소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1	동북고 교사동 지하LED 교체	89	82	소음 및 석면공사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 기간을 확보하여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2	주몽학교 옥상파고라 천막 및 스탠드 교체	70	70	2015년 하반기 교부로 학기 중 공사 시 소음 피해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3	보성중 교사동 치장벽돌보수	120	119	2015년 하반기 교부로 학기 중 공사 시 소음 피해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4	영파여고 외벽보수	120	120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5	보성고 교사동 치장벽돌보수	180	177	2015년 하반기 교부로 학기 중 공사 시 소음 피해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196	한영고 교사동 치장벽돌 보수	372	372	2015년 하반기 교부로 학기 중 공사 시 소음 피해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학 중 공사 추진	강동송과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197	보성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98	98	2015년 하반기에 전입된 서울시전입금으로 디자인디렉터 선정일정 등이 지연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198	장원유치원 학교 신설	5,952	4,449	공사 완료 기간 미도래 (2016.04.10)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199	장원초 학교신설	16,727	7,050	공사 완료 기간 미도래 (2016.02.28)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0	미사리초 학교신설	3,356	2,782	공사 완료 기간 미도래 (2017. 3월 개교)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1	동북중 식당개선	30	30	학기 중 급식실시로 인해 겨울방학 중 공사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2	동북고 학생식당지붕 방수공사	14	14	학기 중 급식실시로 인해 겨울방학 중 공사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3	탑산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565	1,229	설계, 공사 소요 사업기간 부족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204	신월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120	104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05	신남중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3,364	2,033	설계, 공사 소요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06	월촌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1,266	1,251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07	신목고 전기시설개선	445	410	학교장 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08	등원중 냉난방개선	80	75	학교장 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09	신서초 내진보강	785	726	학교장 요구 (2016년 여름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10	개화초 창호개선	28	10	학교장 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11	백석초 창호개선	40	40	학교장 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12	신서초 외벽개선	648	33	학교장 요구 (2016년 여름방학 중 내진보공사와 동시 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13	양원초 외벽개선	70	69	학교장 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14	은정초 화장실개선	100	77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15	방화초 화장실개선	20	20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16	양명초 화장실개선	20	20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17	염경초 화장실개선	20	20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18	화원중 화장실개선	450	16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19	등원중 화장실개선	100	71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0	성재중 화장실개선	100	79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1	화원중 화장실개선	100	76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2	금옥중 화장실개선	100	69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3	송화초 외부환경개선	439	422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4	염동초 LED조명교체	374	367	학교장요구(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25	등촌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254	1,211	설계,공사 소요 사업기간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226	양서중 학생식당설치	472	431	학교장요청(방학기간 중 공사시행)	강서 교육지원청
227	신정여중 비상계단보수	257	257	땅속 지하의 지장물의 이설로 협의 지연, 교육계획에 의한 하반기 학사일정으로 공사 지연, 11월 기상날씨의 변화로 공사 지연 (젖은 비로 인한 지연)	강서 교육지원청
228	대일고 지붕기와 보수	339	339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조정	강서 교육지원청
229	백암고 화장실개선	274	271	학교 상하반기 학사일정 및 수능시험 등으로 공사 기간을 겨울방학 중으로 계획, 공사 착공을 연기하여 절대공기 부족	강서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30	서울영상고 냉난방개선	257	239	교실 및 교무실 등 학생, 교사의 사용공간에 공사가 이뤄져야 하고, 공사 예상기간(약50일)이 길어져서 겨울방학 중 공사 진행	강서 교육지원청
231	한광고 냉난방개선	421	321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시공	강서 교육지원청
232	언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531	1,503	사업기간 절대부족 (체육관과 병행증축)	강남 교육지원청
233	대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설계비	75	64	학교와의 협의 장기화로 사업기간 절대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34	이수중 급식실개선	50	49	겨울방학기간 공사 추진으로 사업기간 절대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35	우면초 학생식당증축	139	2	감리용역 완수기간 미도래	강남 교육지원청
236	진선여고 오븐기외3종 구입	58	58	급식 종료 후 겨울방학 중 설치예정	강남 교육지원청
237	(가칭)내곡중 학교신설	683	429	설계용역 완수기간 미도래	강남 교육지원청
238	언남중 강당겸 체육관 증축	50	55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39	언북초 화장실 증축공사	630	391	준공시기 미도래	강남 교육지원청
240	압구정중 화장실개선	360	22	화장실개선공사와 병행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남 교육지원청
241	서초중 GHP개선	288	12	화장실개선공사와 병행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남 교육지원청
242	대모초 EHP개선	107	10	화장실개선공사와 병행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강남 교육지원청
243	언북중 본관동 도장	68	7	학교장 요청으로 겨울방학 추진	강남 교육지원청
244	경기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68	99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45	경기고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6	46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46	논현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0	54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47	도곡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0	10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48	신중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0	35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49	서초문화예술정보학 교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0	11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0	연북중 본관동 외부창호개선 공사	898	524	학교장 요청으로 겨울방학 중 추진	강남 교육지원청
251	서초중 창호개선	150	9	준공시기 미도래	강남 교육지원청
252	대모초 신관 화장실 개선공사	450	439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3	이수초 본관동 화장실개선 공사	120	158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4	서울고 본관 우측화장실 개선	362	276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5	서운중 신관동 화장실 개선	100	96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6	서초중 별관동 화장실 개선	100	88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7	정애학교 교사동 화장실개선	100	96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8	서이초 교실 중연창 및 출입문 개선	246	237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59	서울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1,187	28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60	서문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80	179	방학 중 공사요청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강남 교육지원청
261	수도전기공고 본관외벽도장	124	124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강남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62	영동고 본관동EHP	380	270	1월4일 방학 중 공사 시작 예정 (교실포함 총 40실입)	강남 교육지원청
263	매현초 BTL운영비	122	30	운영사 미청구 및 4/4분기성과평가 미실시	강남 교육지원청
264	관악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70	52	복합화 추진 지연 및 설계공모 추진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65	남사초 화장실개선	100	77	학교의 급식실 통합발주 요청으로 착공일정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66	동작초 화장실개선	100	4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67	난곡초 화장실 보수보강	429	411	철거 등으로 인한 학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68	동작고 체육관 GHP설치	329	268	학교 측 겨울방학 중 공사 요청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69	본동초 후관동 옥상방수	35	34	난향초 방수 및 화장실개선과 통합발주로 겨울방학 중 추진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0	난향초 본관동 옥상방수	79	76	화장실 통합발주로 학교의 겨울방학 중 공사 요청에 따른 착공일정 조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1	수도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79	263	소음 등에 따른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2	청룡초 스캔드차양공사	116	101	관급자재 검수처리기간 필요 (납품기한2015.12.3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3	신림초 교사동 균열보수 및 기타	19	18	내부공사 추진으로 학사일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4	당곡초 가동 외벽인방보수	75	72	철거 등에 따른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 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5	신봉초 방송선로교체	50	48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6	동작중 보통교실 천정석면 텍스교체	130	125	내부공사로 겨울방학 중 시행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7	국사봉중 시설관리위험개소 보수	50	47	철거 등으로 학사일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78	당곡고 구)급식실 철거	70	66	철거 등으로 학사일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79	미성중 중연창 및 출입문 개선	336	322	내부공사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0	흑석초 화장실개선	120	7	구암중 관급자재와 통합발주로 구암중 화장실 개선(후관동)과 같이 겨울방학 추진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1	난향초 화장실개선	362	339	학교의 겨울방학 중 추진요청으로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2	관악초 화장실개선	100	87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및 디자인 계획용역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3	남부초 화장실개선	100	83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및 디자인 계획용역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4	원신초 화장실개선	100	90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및 디자인 계획용역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5	신상도초 화장실개선	20	16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6	상도중 화장실개선	100	89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및 디자인 계획용역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7	신림중 화장실개선	100	88	2015.10.02. 예산 배정되어 설계 및 디자인 계획용역 후 공사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8	관악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49	49	복합화 추진 지연 및 설계공모 시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89	노량진초 학생식당내 화장실 철거	30	30	급식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0	문창초 트렌치교체 등	40	32	급식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1	사당초 전장공사의 2중	60	56	급식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2	남강중 강당 개선	90	90	강당개선 사업이 현 가사실을 철거하여 확장하는 공사로 학기 중 수업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3	서울관광고 조리실습실 환경개선	75	75	학기 중 조리실습실 수업에 따른 방학 중 공사 추진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4	성보고 본관동 외벽개선	528	446	학생 수업 및 교육활동 지장이 우려되어 부득이 수능이후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295	영락고 전화통신시설 개선	50	44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학기 중 교육활동 지장이 우려되어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296	구남초 화장실개선	100	79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297	금북초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1	9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298	금북초 바닥교체공사	50	44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299	금북초 화장실개선	350	285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0	금호초 교실내벽 칸막이 및 출입문 교체	95	79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1	금호초 창호개선	76	70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2	금호초 운동장보수	30	10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3	마장초 화장실개선	20	20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4	무학초 본관동 외벽개선	499	361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5	사근초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14	13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6	사근초 본관동-후관동 연결통로 설치	138	123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7	신양초 본관동 외부창호개선	643	513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8	양남초 화장실개선	51	38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09	용담초 화장실개선	100	81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0	용마초 외부창호개선	627	237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1	응봉초 화장실개선	100	81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2	광진중 화장실개선	100	88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13	광희중 화장실개선	100	87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4	동마중 안전난간대 설치 시설환경개선	40	37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5	마장중 화장실개선	20	12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6	신양중 본관동 복도바닥 보수	280	271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7	옥정중 장애인편의시설	187	170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8	행당중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31	21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19	무학여고 균열보수 및 기타공사	22	12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0	자양고 도장공사	149	136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1	마장초 체육시설 증축공사	300	257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2	구의중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	1,237	1,151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3	금호고 교사신축공사	3,302	2,705	부지매입 지연으로 공사 착공 대기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4	왕십리고 교사 신축공사	4,631	4,617	부지매입 지연으로 공사 중지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5	경수중 급식실바닥 개보수	35	35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6	옥정중 급식실 바닥 방수처리 및 타일공사	100	91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7	무학여고 급식실 바닥 방수 및 누수 보수	58	58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28	건대부고 급식실 바닥 및 벽타일교체 외 1종	76	76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29	구의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237	1,232	준공시기 미도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0	한대부중 급식실 연결통로 설치	120	119	학생들의 주 이동통로로 학기 중 공사가 불가능하여 겨울방학에 공사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1	건대부고 장애인 편의시설	195	74	선급금, 1차, 2차 기성금을 제외한 송금 잔액에 대하여 시공업체측의 준공지체로 이월 예정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2	건대부고 창호개선	87	86	교실출입문 교체 공사로서 학생들 일반교실 대상 공사이므로 학기 중 공사가 불가하여 겨울방학 공사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3	건대부고 교사동 치장벽돌보수	80	78	조리실 바닥 및 벽타일 교체 공사로서 급식이 없는 방학에만 공사 가능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4	동대부여고 방송시설개선	310	310	겨울방학식 이후 전교실 공사 예정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5	동대부여고 샛별관 냉난방기교체	189	150	샛별관(3학년 교실전체) 건물로 수능시험 이후 공사 예정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36	변동초병유 학교 신증설	420	398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37	수송초 복합화시설	3,548	1,581	장기계속 공사로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38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2,128	1,776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성북 교육지원청
339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20	20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성북 교육지원청
340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기숙사 증축	3,900	2,006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기숙사 증축공사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1	미양초 화장실개선	20	18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2	강북중 화장실개선	100	85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3	종암중 화장실개선	100	96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4	화계중 화장실개선	25	25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5	변동초 방화문설치	40	34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46	삼선중 옥상방수	168	160	2015.11.6. 특교 교부,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47	동신초 균열보수	14	14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48	미양초 균열보수	21	18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49	미양초 연결통로 설치	240	176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50	석관초 균열보수	12	12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1	송천초 균열보수	31	25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2	수유초 균열보수	21	21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3	송곡초 균열보수	10	10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4	안암초 체육공간 개선	106	73	2015.11.06. 특교 교부,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55	삼선중 균열보수	15	15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6	수송중 방송개선	20	19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7	수유중 균열보수	28	24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8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균열보수	20	20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59	장월초 외벽보수	195	170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성북 교육지원청
360	석관고 외벽보수	624	345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61	돈암초 바닥개선	501	470	2015.11.06. 특교 교부, 학교측 겨울방학 중 공사 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62	삼각산초 바닥개선	668	399	2015.11.06. 특교 교부, 학교측 겨울방학 중 공사 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63	미양초 덤웨이터 교체	72	72	겨울방학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64	번동초 바닥, 배기후등 천정 교체공사	102	93	겨울방학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65	송천초 학생식당설치 및 덤웨어 교체	458	433	겨울방학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66	월곡중 다트 교체, 이동통로 및 조리원휴게실 보수공사	30	28	겨울방학 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성북 교육지원청
367	고대부중 본관동화장실 증축	593	593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성북 교육지원청
368	동구마케팅고 성암관 자담 설비 교체	35	32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69	용문고 신관,EHP	100	92	설계기간이 길어져 하반기 계약체결로 공사 기간 절대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70	홍대부고 화장실개선	210	184	설계기간이 길어져 하반기 계약체결로 공사 기간 절대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71	신일중 전등, 식수대 등 교육환경개선	50	50	2015.11.10. 성립전 우선확정 예산으로 공 사기간 절대 부족	성북 교육지원청
372	인정도서 본심사위원 수당	18	15	사업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임	교육연구 정보원
373	학교홈페이지 웹빌더 개발	400	350	추경 예산으로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 정보 화 사전심의, 보안성 검토 등의 심의 과정 수행 및 조달청 계약업무 지연으로 사업기 간 절대 부족(2015.11.25. 계약)	교육연구 정보원
374	학교홈페이지 빌더 개발 및 노후 인프라교체 감리용역	66	52	감리대상 사업인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웹 빌더 개발사업 및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 종료 이후 감리용역 완료 예정(2016.4.16.)	교육연구 정보원
375	교육정책개발운영	200	6	사업완료 기일(2016.2.26.) 미도래	교육연구 정보원
376	교육정책연구	40	7	사업완료 기일(2016.2.26.) 미도래	교육연구 정보원
377	웹호스팅 DB서버교체	544	471	추경 예산으로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 정보화 사전심의, 보안성 검토 등의 심의 과정 수행 및 경쟁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절대 사업기한 부족(2015.11.30. 계약)	교육연구 정보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유	소관부서
378	웹호스팅 DBMS도입	630	456	추경 예산으로 사업발주 전 일상감사, 정보화 사전심의, 보안성 검토 등의 심의 과정 수행 및 경쟁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한 절대 사업기한 부족(2015.11.30. 계약)	교육연구 정보원
379	기자재 구입 (노후기자재 교체)	187	75	조달청 계약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교육 연수원
380	수련시설물 개선공사	162	13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학생 교육원
381	방염텐트 제조구매	55	37	텐트 원단의 방염·방수처리 검사로 인한 처리기간 연장	학생 교육원
382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46	46	조달요청계약 입찰 공고 지연으로 계약체결일 및 납품완료일 지연	유아교육 진흥원

자. 채권

〈표 8-10〉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14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89,302	2,610	5,832	3,222	291,912
토지매각대	1,830	△345	375	720	1,485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449	△170	14	184	279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815	1,215	1,340	125	5,030
대 지 료	375	△99	94	193	276
대 가 료	6	9	10	1	15
입 학 금	0	0	0	0	0
수 업 료	870	2,369	2,832	463	3,239
기타사용료	2	△2	0	2	0
변 상 금	7,329	118	515	397	7,447
위 약 금	2,072	253	316	63	2,325
잡 수 입	5,274	△738	336	1,074	4,536
대여장학금	267,280	0	0	0	267,280
사무실임대료	0	0	0	0	0

차. 채무

〈표 8-11〉 채무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14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 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373,225	815,069	870,069	55,000	1,188,294	3,173

카. 공유재산

〈표 8-12〉 재산별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중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가	감 소	
합 계	29,051,821	682,792	869,142	186,350	29,734,613
행정 재산	28,857,488	684,328	850,004	165,676	29,541,816
공용 재산	28,856,518	684,328	850,004	165,676	29,540,846
공공용재산	0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 재산	970	0	0	0	970
일반 재산	194,333	△1,536	19,138	20,674	192,797

타. 물품

〈표 8-1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품목 종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21종	수량	38,624	627	3,052	3,679	383	9,890	10,273	32,030
	금액	101,418	2,387	9,644	12,031	4,541	24,382	28,923	84,525

파. 성인지결산

〈표 8-14〉 성인지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24	139,055	137,075	98.6

〈표 8-15〉 사업분류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		24	139,055	137,075	98.6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9	58,249	57,839	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	30,669	30,053	98.0
	교육부지정사업	10	50,137	49,183	98.1
선택	자체추진사업	0	0	0	0

〈표 8-16〉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		139,055	137,075	98.6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5,335	44,687	98.6	
①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24,762	25,209	101.8	
	교원연수지원	중등교원연수지원	885	885	100.0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17,255	17,219	99.8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취업기능강화특성화교육성	600	600	100.0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1,120	1,095	97.8
	진로진학교육	맞춤식진로교육	2,662	3,170	119.0
	마이스터고운영지원	마이스터고지원	2,240	2,240	100.0
② 다양한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0,573	19,479	94.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090	3,090	100.0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20	120	100.0
	체육육성중목지원	선진운동부육성	386	386	100.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스포츠강사지원	16,977	15,883	93.6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47,629	47,289	99.3	
①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47,629	47,289	99.3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47,629	47,289	99.3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11,257	11,223	99.7	
①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11,257	11,223	99.7	
	평생학습운영지원	장애성인평생교육	659	646	98.0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안전망구축	10,598	10,577	99.8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4,202	4,190	99.7	
①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202	4,190	99.7	
	특수교육운영	방과후활동지원	3,932	3,918	99.7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270	272	100.7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1,483	1,302	87.8	
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1,483	1,302	87.8	
	교원임용관리	교장및기관장임용	65	45	69.2
	수석교사제운영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50	295	84.2
	수석교사제운영	중등수석교사제운영	1,068	962	90.1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9,092	28,377	97.5	
① 초·중·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9,092	28,377	97.5	
	교직원단체관리	교원노사관리	191	152	79.5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특별학교지원	28,344	27,810	98.1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45	37	82.6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사심화연수	344	202	58.9
	도서관운영지원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168	176	104.8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57	6	10.5	
①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57	6	10.5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57	6	10.5